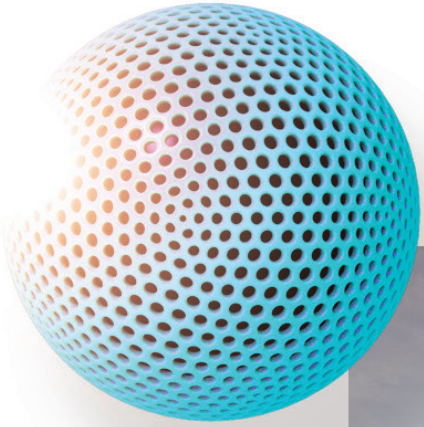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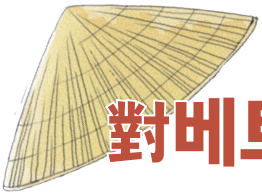

# 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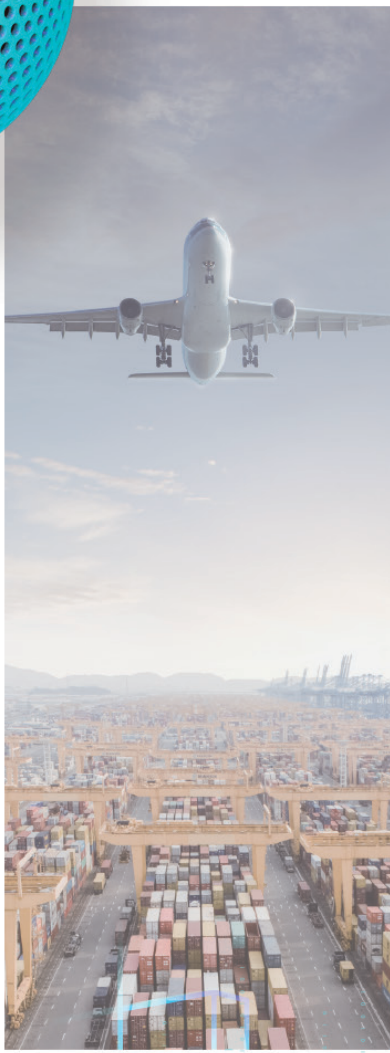

서울본부세관
Seoul Central Customs

한국식품산업협회

# 발 간 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全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K-푸드는 2020년 75.7억불이라는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성장세가 계속되어 41.5억불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新남방 지역은 정부의 新남방정책에 부응하여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베트남은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 4위 해외투자국으로, 新남방 지역 중 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외에도 전 세계 무역규모의 약 30% 가량을 차지할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도 앞두고 있어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푸드의 베트남 수출 및 시장진출을 돕고자 「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북은 수출 초보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정보 · 법규부터 수출절차 및 FTA활용 방법까지 수출의 全과정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K-푸드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9월

서울본부세관장 성태곤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이효율

# CONTENTS

## Ⅰ. 베트남 개요

1. 국가개요 ····· 8
2. 베트남 현황 ····· 9
3. 유통시장 동향 ····· 15

## Ⅱ. 수출절차

1. 수출절차 및 신고 ····· 28
2. 계약 ····· 30
3. 서류준비 ····· 31
4. 선적/출항 ····· 44
5. 수입식품 등록 및 통관 ····· 45

## Ⅲ. FTA 활용

1. FTA 단계별 수출활용 ····· 50
2. 활용 가능 FTA ····· 55
3. 품목분류 기본 ····· 59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69
5. 원산지인증수출자 ····· 75
6. 원산지증명서 발급 ····· 88
7. 서울세관 중소기업 주요 지원사업 ····· 100

## Ⅳ. 해외통관애로 해소

# I 베트남 개요

1. 국가개요

2. 베트남 현황

3. 유통시장 동향

# 01 국가개요

| 구 분 | 설 명 |
|---|---|
| 국가정식명칭 | ㅇ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 위치 | ㅇ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
| 수도 | ㅇ 하노이(Ha Noi) |
| 정부형태 | ㅇ 사회주의 공화제 |
| 언어 | ㅇ 베트남어(공용어) |
| 화폐 | ㅇ 베트남 동(VND) |
| 종교 | ㅇ 불교(4.8%), 천주교(6.1%) 등 |
| 인구 | ㅇ 9,816만명(세계 15위, 40대미만 청년층 인구 약 62%) |
| 민족구성 | ㅇ 비엣족(85.3%) 외 55개 소수민족 |
| 기후 | ㅇ (북부) 아열대성 / (남부) 열대몬순 |
| 면적 | ㅇ 33.1만$km^2$(세계 65위, * 국토교통부) |
| 시차 | ㅇ KST(한국표준시간) -2시간 |
| 주요경제지표('20) | 경제성장률(2.91%) 명목GDP(3,430억$) ,1인당 GDP (8,200$) |

# 02 베트남 현황

## ▶ 인구 통계학적 특성[1)]

베트남 인구는 10년 사이 1,040만명이 증가하여 ASEAN 국가 중 3위, 연평균 인구 성장률 1.14%('09~'19년)로 '25년에는 1억 명 돌파 예상

**베트남 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
| 인구 수 | 92,695.1 | 93,671.6 | 94,666 | 96,209 |

* '19년도 수치는 '19. 4. 25. 기준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인구비중) 전체 인구 중 여성 49.83%, 남성 50.17%로 집계되며 연령별로는 25~54세가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4세 이하가 22.61%를 차지
- '20년 베트남 중위연령은 31.9세로 집계(*한국 중위연령 43.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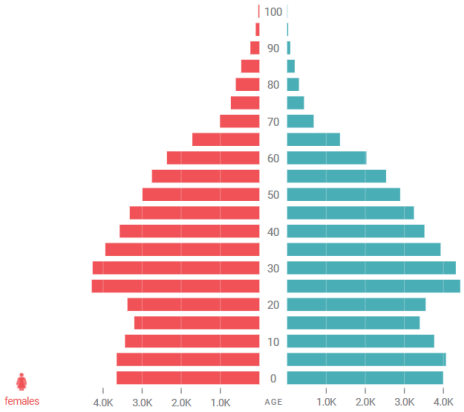


* 자료: UNFPA

(단위 : 천 명)

베트남 인구구조('20년)

1)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10년만에 돌아온 베트남 인구센서스(작성자:윤보나)'와 '베트남 소비를 이끄는 MZ세대(작성자:김진모)'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kotranews)'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MZ세대('80년대~'00년대 초반 출생)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47.2%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 '19년 기준, 한국은 37.1%)
  - (경제활동) 25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가 베트남 경제활동 인구 중 51.3%로 MZ세대가 경제적 독립을 기반으로 소비를 주도
  - (세대문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여 외국 문화에 친숙할 뿐만 아니라 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활동이 활발하므로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기여
  - (소비특성)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정보를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한 뒤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에 보다 적극적임

## 경제 현황[2)]

- 높은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식품시장 보유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의 GDP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베트남은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 베트남 GDP성장률 : '18년(7.1%), '19년(7.0%), '20년(2.91%,*예측), '21년(6.3%,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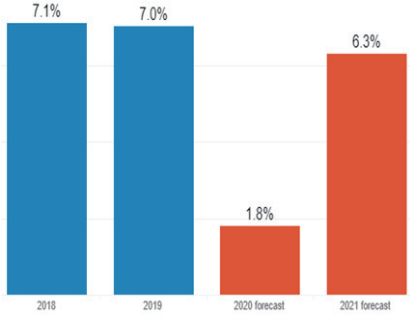


*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20년 9월) (%, per year)

GDP Growth Rate: Viet Nam

2) 본 저작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0 농식품 수출국가 정보(신남방국가)',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2021년 작성한 2021 베트남 진출전략'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와 'Kotra 해외시장뉴스(m.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1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코로나19 이전 80~90% 수준 회복기대

**세계 주요 은행의 베트남 성장률 전망치**

| 경제기관 | '20년 전망(%) | '21년 전망(%) | 예상 증감률(%p) |
|---|---|---|---|
| 베트남 정부 | 4.5 | 6.0~6.5 | 1.5~2 |
| ADB | 1.8 | 6.3 | 4.5 |
| Goldman Sachs | 2.7 | 8.1 | 5.4 |
| IMF | 2.7 | 7 | 4.3 |
| World Bank | 2.8 | 4.5~6.8 | 1.7~4 |

* '20년 8월 기준
* 자료: 기관별 발간 보고서

▭ 1인당 연평균 GDP는 약 3,000달러, 가구당 연평균 소득 6,206달러로 추정

- 개인 및 가정의 소규모 경제 활동이 전체 생산의 87.7%를 차지, 국가 총 고용 시장의 32%로 집계

* 베트남 소비자의 높은 현금 선호도와 공식집계에 드러나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로 인해 소득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움

| 주요경제지표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경제성장률 (%) | 6.21 | 6.81 | 7.08 | 7.02 | 2.91 |
| 명목GDP (십억$) | 201.33 | 220.38 | 241.27 | 261.64 | 343 |
| 1인당 GDP (PPP, $) | 6,573 | 7,155 | 7,771 | 8,041 | 8,200 |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통계상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420만동이며, 이 중 식음료 소비에 약 20%를 지출('19년)
- (연간 식품 소비액) 가공식품 295.09달러, 신선식품 224.52달러 베이커리류 및 시리얼류→스낵류→채소류→육류 순으로 비용 지출

* 연간 식품 소비량 기준으로도 베이커리류 및 시리얼류가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신선식품의 소비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무역동향(수입)[3)]

### 농식품 수입규모

- 농식품 수입액 전년 대비 1.9% 증가로 91억 4,121만 9,000달러 규모, 연평균 성장률 5.2% 기록('19년)
- (주요 수입국) 아르헨티나(16.9%), 미국(12.8%), 중국(7.8%) 등
- (주요 품목)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단일 품목으로는 기타 조제 식료품(8.7%), 기타 팜유 및 분획물(5.8%) 등의 순으로 집계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5년 이후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연평균 21.6% 증가세를 기록('15/'19)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비중 ('19) | 전년비 ('18/'19) | 연평균 ('15/'19) |
|---|---|---|---|---|---|---|---|---|
| 기타 조제 식료품 | 476,915 | 509,664 | 526,542 | 586,243 | 789,919 | 8.7 | 36.3 | 13.8 |
| 기타 팜유 및 분획물 | 457,195 | 510,865 | 568,737 | 541,439 | 530,770 | 5.8 | 2.0 | 3.8 |
| 맥아 추출물과 조제식료품 (영유아 및 어린이용) | 230,898 | 258,559 | 290,454 | 230,119 | 271,836 | 3.0 | 18.1 | 4.2 |
| 밀크와 크림 | 200,012 | 167,409 | 192,210 | 172,339 | 247,289 | 2.7 | 43.5 | 5.4 |
| 맥아(볶지 않은 것) | 135,745 | 128,088 | 116,885 | 128,272 | 195,138 | 2.1 | 52.1 | 9.5 |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전체 중 상위 1~5위까지만 표시함
* 자료 :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신남방(10개국)

### 한국 對베트남 수출 현황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5년 이후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연평균 21.6% 증가세를 기록('15/'19)
- '19년 한국산 농식품 對베트남 수출액 5억 1,398만 3,200달러 규모, 전년 대비 14.9% 증가
- (수출 비중) 농산물이 6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 축산물(21.8%), 임산물(5.8%) 순으로 집계

3) 본 저작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신남방국가)'를 이용 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對베트남 수출 규모**

(단위: 천 달러,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비중 ('19) | 전년비 ('18/'19) | 연평균 ('15/'19) |
|---|---|---|---|---|---|---|---|---|
| 전체 | 371,412.9 | 402,944.2 | 374,666.7 | 447,437.6 | 513,983.2 | 100.0 | 14.9 | 8.5 |
| 농산물 | 242,081.0 | 270,701.5 | 298,300.0 | 308,105.9 | 358,318.2 | 69.7 | 16.3 | 10.3 |
| 축산물 | 79,941.9 | 71,624.0 | 36,848.3 | 77,860.4 | 111,915.5 | 21.8 | 43.7 | 8.8 |
| 임산물 | 49,390.0 | 60,618.7 | 39,518.4 | 61,471.3 | 43,749.5 | 8.5 | 28.8 | 3.0 |

* 자료 :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신남방(10개국) , 출처 : KATI(농식품수출정보)

- (주요 품목) 기타 음료, 닭고기(냉동), 기타 조제품, 과당시럽, 라면 등
  · 기타 음료의 경우 최근 3년간('17~'19) 연평균 성장률 29.2%로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전체 농 · 축 · 임산물 수출액의 6.2% 차지

**對베트남 수출 상위 5개 품목**

(단위: 천 달러,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비중 ('19) | 전년비 ('18/'19) | 연평균 ('15/'19) |
|---|---|---|---|---|---|---|---|---|
| 전체 | 371,412.9 | 402,944.2 | 374,666.7 | 447,437.6 | 513,983.2 | 100.0 | 14.9 | 8.5 |
| 기타음료 | 0.0 | 0.0 | 19,078.4 | 26,736.2 | 31,868.1 | 6.2 | 19.2 | 29.2 |
| 닭고기(냉동) | 16,625.6 | 14,214.8 | 2,789.5 | 15,096.9 | 29,006.6 | 5.6 | 92.1 | 14.9 |
| 기타조제품 | 8,890.3 | 11,088.0 | 11,148.5 | 15,426.1 | 25,311.2 | 4.9 | 64.1 | 29.9 |
| 과당시럽 | 10,512.4 | 12,325.7 | 8,042.5 | 13,851.4 | 23,448.6 | 4.6 | 69.3 | 22.2 |
| 라면 | 3,654.2 | 6,956.5 | 13,697.2 | 14,870.9 | 19,159.9 | 3.7 | 28.8 | 51.3 |

* 기타음료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17/'19) 기준으로 계산
* 자료 : 2020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신남방(10개국), 출처 : KATI(농식품수출정보)

## ▶ 글로벌 무역 활동

### 적극적인 시장개방

- '20년 베트남의 FTA 발효예정국은 총 52개로 다자간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무역활동을 위한 통상환경 마련

| 〈 FTA 체결국 현황〉 |
| --- |
| 일본, 칠레, 한국, ASEAN, EAEU, CPTPP, EU 등 |

* ASEAN 가입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EAEU 회원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 CPTPP 회원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

## 한국 관련 FTA 체결 현황

1) 한-아세안 FTA

- (발효일자) 2007. 6. 1.
-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의 베트남과 체결

2) 한-베트남 FTA

- (발효일자) 2015. 12. 20.
- 기존 한-아세안 FTA상 불균형한 상품 양허수준 개선

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체결일자) 2020. 11. 15.
- 아시아 · 태평양 국가의 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 FTA
- 기존 FTA협정 간 특혜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 적용 기대

* RCEP 회원국 :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對세계 RCEP협정 경제규모('19년) : GDP 28%, 인구 29%, 수출입 27%
* 자료 : World Bank

# 03 베트남 시장 동향

## ▶ 소매시장 및 유통채널 현황[4)]

### 소매시장 전반

- 아세안 소매기업 순위 상위 50위에 베트남 대표 소매기업 5개사가 포함되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
- (시장규모) 소매시장 1,110억 달러 규모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 (성장률) '19년 연간 판매량은 전년대비 11.5%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최고 판매 성장률 시현

  * 연간 소비재 판매 증가율('15~'19년) : 6.6% → 8.9% → 10.7% → 9.5% → 11.5%

-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소매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동시에 GDP 대비 소매시장 비중도 45.6%로 크다는 점에서 유망

  * 인도네시아 16.1% 대비, 2.8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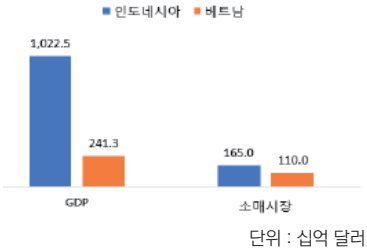


GDP 및 소매시장 규모('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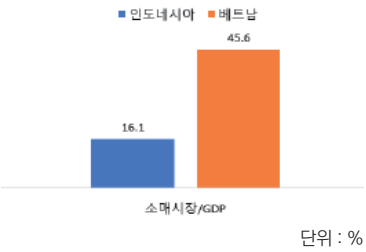


소매시장/GDP 비중('18년)

* 자료: IMF, 유로모니터

- '15년 이후 베트남은 투자법 개정으로 100% 외국인 소유 자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해져 유통시장의 투자가 본격화

  *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의 우대정책, 빠른 도시화, 풍부한 젊은 인구, 가파른 GDP의 성장 등이 소매유통 시장의 성장을 견인

4) 본 저작물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2020년 작성'한 '아세안 소매유통시장 진출, 왜 베트남인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제무역통상연구원(http://iit.kita.net)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통채널[5)]

- 일반적으로 재래유통채널과 현대식 유통채널로 분류
  - · (재래유통채널) 식품/음료 전문점, 개인 혹은 가족 경영 소규모 소매점, 기타 식품 소매점을 의미하며 전체 식품판매액의 95%('15년 기준) 차지
  - · (현대식 유통채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포함
- 소매시장의 유통채널별 현황

쇼핑몰
(150개)

슈퍼마켓
(800개)

재래시장
(9,000여개)

영세상점
(220만여개)

* 출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 · 현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전통 재래시장 규모의 영향으로 압도적으로 높음

    * (시장점유율) 현지 기업 83%, 외투기업 17%

  - · 재래시장은 베트남 소매시장에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위생 및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확대로 인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감소하는 추세
- 외투기업은 현대화된 유통채널에서 강세를 나타냄
  - · 하노이와 호치민 중심으로 확대 중인 편의점, 대형 할인마트 성장이 주목

쇼핑몰

Big C
(태국계)

Aeon
(일본계)

Lotte Market
(한국계)

MM Mega Market
(태국계)

편의점

GS25
(한국계)

7-eleven
(일본계)

Shop & Go
(싱가포르)

B's mart
(태국계)

Ministop
(일본계)

외국계 식품소매유통기업의 메인플레이어

5) 본 저작물은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 로컬 식품 유통기업의 성장(작성자:심수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로컬 메인 플레이어로는 Vin commerce가 압도적, 대형마트인 빈마트와 편의점 형태의 빈마트 플러스가 대도시 및 소규모 도시에 고루 확대 운영
  → 마산그룹이 Vin commerce 인수합병('19. 12. 3.)
- 농장들과 네트워킹한 농산물 유통전문점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확대

  * 대표적 브랜드: Bach Hoa Xanh, Satrafoods, Co.op Food 등

- 전자레인지 등 조리기구 및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편의점 인기증가
  · 전년 대비 점포수 약 70%이상 증가(총 5,228개점, * '20년 6월 기준)
  · '20년 편의점 매출액 전년 대비 11% 상승(3억 5,300만 달러)
  · 그 외 서클케이, 패밀리마트 등 글로벌 체인들도 점포 확장 추세

### 유통채널 특징[6)]

- 매우 높은 재래시장의 시장점유율
  · 베트남 전역에 9천 곳 이상의 재래시장 존재
  · 가격흥정을 통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
  · 그러나 냉장시설이 미흡하여 식품의 보관 및 위생환경이 열악
  · 대형유통업체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대도시 소비자
  · 과거에는 재래시장에서 농수산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신선하다고 인식
  · 하지만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자 층이 형성되는 추세
- 구매력의 성장 및 급격한 도시화, 외국 및 로컬 유통기업 등의 잇따른 성장에 따라 소매시장의 중심이 재래시장에서 슈퍼마켓 · 편의점 등 현대식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

6) 특징 본 저작물은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 로컬 식품 유통기업의 성장(작성자:심수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로 보는 현지 유통업체 입점절차 (빈마트)

꽁보발행 → 입점신청 → 입점심사 → 코드부여 → 입점

**① 꽁보(수입허가서) 발행**

(발행주체) 수입자 또는 현지법인이 직접 발행
(소요기간) 1개월

**② 입점심사신청**

(구비서류) 꽁보, 제품 샘플, 제품번역서(포장전체), 시험성적서

* 기능성식품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 및 GMP 요구

(소요기간) 최소 1~2개월

**③ 입점심사**

(품질심사) 모든 서류와 제품정보의 일치여부 및 적합성 심사

*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 및 제품라벨 변경 가능

(소요기간) 최소 1~2개월

**④ 최종확정 및 입점코드부여**

(상품기획) 빈마트 MD의 코드승인 및 코드부여
(소요기간) 2~3주

**⑤ 입점**

빈마트 각 지점으로부터 주문서 수신 후 진열

※ 입점 심사 시 제품별로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음
업체별/상황별 입점심사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

# (예시) 실제 입점신청 제출 서류

## 수입허가서(꽁보)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

**BẢN TỰ CÔNG BỐ SẢN PHẨM**
Số: 36/Continew/2021

**I. Thông tin về tổ chức, cá nhân tự công bố sản phẩm**
Tên tổ chức, cá nhân: CÔNG TY TNHH TV CONTINEW
Địa chỉ: Số 12, ngõ 275 Âu Cơ, Phường Nhật Tân, Quận Tây Hồ, Thành phố Hà Nội, Việt Nam
Mã số doanh nghiệp: 0108280909
**II. Thông tin về sản phẩm**
1. Tên sản phẩm: **CHÁO YẾN MẠCH THỊT ỨC GÀ**
2. Thành phần:
Nước tinh khiết, ức gà (trong nước) 14%, bột yến mạch (Canada) 10%, chiết xuất gà 2,3% [Xương gà (Hàn Quốc), muối tinh (Hàn Quốc)], chế phẩm tinh bột [Chất ổn định: 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 (INS 1442), maltodextrin], Yến mạch cắt nhỏ (Canada)0,8%, các chế phẩm hỗn hợp Samgal, chất chống oxy hoá: Natri ascorbat (INS 301), hỗn hợp vitamin E [chất chống oxy hoá: d-alpha-Tocopherol (INS 307a), tinh bột biến tính, maltodextrin, silic dioxit], Niacin, hỗn hợp vitamin A (vitamin A, maltodextrin, tinh bột ngô, Chất ổn định: gôm arbic (INS 414)], Kẽm oxyd,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2, acid folic, dầu mè.
3. Thời hạn sử dụng sản phẩm: 365 ngày trước hạn sử dụng. Hạn sử dụng in trên mép bao bì sản phẩm (năm/tháng/ngày).
4. Khối lượng tịnh và chất liệu bao bì:
- Khối lượng tịnh: 300g/hộp, 12.600g/42 hộp/thùng.
- Chất liệu bao bì: Sản phẩm đựng trực tiếp trong túi nhựa PP/Film-PE, đảm bảo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theo quy định của Bộ Y tế.
5. Tên và địa chỉ cơ sở sản xuất sản phẩm:
Xuất xứ: Hàn Quốc
Nhà sản xuất: Agricultural Company Corporation
Địa chỉ: 65-2 Maeji-gil 27 beon-gil, Opo-eup, Gwangju-si, Gyeonggi-do, Hàn Quốc.
**III. Mẫu nhãn sản phẩm** *(đính kèm mẫu nhãn sản phẩm)*
**IV. Yêu cầu về an toàn thực phẩm**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đạt yêu cầu về an toàn thực phẩm theo:
- Quyết định 46/2007/QĐ-BYT: Quy định giới hạn tối đa ô nhiễm sinh học và hóa học trong thực phẩm.

- QCVN 8-3:2011/BYT: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đối với ô nhiễm vi sinh vật trong thực phẩm.
- QCVN 8-2:2011/BYT: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đối với giới hạn ô nhiễm kim loại nặng trong thực phẩm.
- QCVN 8-1:2011/BYT: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đối với giới hạn ô nhiễm độc tố vi nấm trong thực phẩm.

Các chỉ tiêu vi sinh vật:

| TT | Chỉ tiêu | ĐVT | Mức tối đa |
|---|---|---|---|
| 1 | TSVSVHK | Cfu/g | $10^6$ |
| 2 | Coliform | Cfu/g | $10^3$ |
| 3 | E.coli | Cfu/g | 100 |
| 4 | S. aureus | Cfu/g | 100 |
| 5 | Cl.perfringens | Cfu/g | 100 |
| 6 | B.cereus | Cfu/g | 100 |
| 7 | TSBTNM-M | Cfu/g | $10^3$ |

Hàm lượng kim loại nặng:

| TT | Chỉ tiêu | ĐVT | Mức tối đa |
|---|---|---|---|
| 1 | Chì | mg/kg | 0,2 |
| 2 | Cadmi | mg/kg | 0,4 |

Giới hạn độc tố vi nấm:

| TT | Chỉ tiêu | ĐVT | Mức tối đa |
|---|---|---|---|
| 1 | Aflatoxin B1 | µg | 2 |
| 2 | Aflatoxin tổng số | µg | 4 |
| 3 | Ochratoxin A | µg | 3 |

Chúng tôi xin cam kết thực hiện đầy đủ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an toàn thực phẩm và hoàn toàn chịu trách nhiệm về tính pháp lý của hồ sơ công bố và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sản phẩm đã công bố./.

*Hà Nội, ngày 03 tháng 06 năm 2021*
**ĐẠI DIỆN TỔ CHỨC, CÁ NHÂN**
*(Ký tên, đóng dấu)*
CÔNG TY TNHH TV CONTINEW
GIÁM ĐỐC
OH JEANG HWAN

## 제품번역서

BẢN DỊCH TRANSLATION

DỊCH NHÃN

Thực phẩm công thức theo trọng lượng

Cháo thịt ức gà yến mạch ăn kiêng
13.58% ức gà, 9.05% bột yến mạch, 0.75% yến mạch cắt nhỏ

300g
(234 kcal)

Tên sản phẩm: Cháo thịt ức gà yến mạch ăn kiêng
Trọng lượng: 300g
Vật liệu đóng gói: PP, Film-PE
Loại thực phẩm: Thực phẩm công thức theo trọng lượng (Sản phẩm tiệt trùng)
Mã số hàng hoá: 20170368065120
Hạn sử dụng: In trên bao bì
Phương pháp bảo quản: bảo quản ở nhiệt độ phòng
Đổi trả hàng: nơi mua hoặc tại nơi cung cấp
Nhà sản xuất: Agricultural Company Corporation (Yeon Co., Ltd. / 65-2 Maeji-gil 27 beon-gil, Opo-cup, Gwangju-si, Gyeonggi-do)
Nhà phân phối: You Co., Ltd.Natural's Best Food / 115 Daecheong-ro, Samseong -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
Nguyên liệu và hàm lượng:
Nước tinh khiết, ức gà (trong nước), bột yến mạch (Canada), chiết xuất gà [Xương gà (gà: trong nước), muối tinh (trong nước)], chế phẩm tinh bột (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 maltodextrin), Yến mạch cắt nhỏ (Canada), công thức hỗn hợp nhân sâm bặc ba, natri L-ascorbat, hỗn hợp vitamin E (dl-a-tocopheryl axetat, tinh bột biến tính, maltodextrin, silic dioxit), Niacin, amide, hỗn hợp vitamin A (vitamin A axetat, maltodextrin, tinh bột ngô, arabic gum, dl-a-tocopherol), kẽm oxit, vitamin B1 hydrochlorid, vitamin B6 hydrochlorid, vitamin B2, acid folic, dầu mè.
Chứa thịt gà
Hướng dẫn sử dụng:
Bạn nên tiêu thụ 1-2 lần một ngày, mở nhẹ nắp nhựa và cho vào lò vi sóng làm nóng trong vòng 2 phút

## 시험성적서

**TSL** CÔNG TY TNHH KHOA HỌC TSL
TRUNG TÂM KIỂM NGHIỆM TSL
ilac-MRA AOSC VLAT 1.0322 ISO/IEC 17025:2017

Trang/ Page No: 1/2

1. **Tên khách hàng/** *Clien*
2. **Địa chỉ/** *Client's Addres* … hố Hà Nội,
3. **Ngày nhận mẫu/** *Date received*
4. **Ngày phân tích mẫu/** *Performance of Test*
5. **Ngày trả kết quả/** *Date of Issue* : 29/05/2021
6. **Thông tin mẫu/** *Name of Sample* : CHÁO YẾN MẠCH THỊT ỨC GÀ
7. **Mô tả mẫu/** *Sample Description* : Mẫu chứa trong bao bì kín
8. **Ghi chú/** *Note* :
9. **Bảng kết quả/** *Results Table* :

| STT/ *No.* | Chỉ Tiêu Thử Nghiệm/ *Testing Analysis(s)* | Kết Quả/ *Result (s)* | Đơn Vị/ *Unit* | GHPH/ *LOD* | Phương Pháp Thử/ *Test Method* |
|---|---|---|---|---|---|
| 1 | Tổng số vi sinh vật hiếu khí (*) / Total aerobic microorganisms (*) | 6.0 x10¹ | CFU/g | 10 | TCVN 4884-1:2015 (ISO 4833-1:2013) |
| 2 | Coliforms (*) / Coliforms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CFU/g | 10 | TCVN 6848:2007 (ISO 4832:2006) |
| 3 | Escherichia coli (*) / Escherichia coli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CFU/g | 10 | TCVN 7924-2:2008 (ISO 16649-2:2001) |
| 4 | Staphylococcus aureus (*) / Staphylococcus aureus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CFU/g | 10 | AOAC 975.55 |
| 5 | Clostridium perfringens (*) / Clostridium perfringens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CFU/g | 10 | TCVN 4991:2005 (ISO 7937:2004) |
| 6 | Bacillus cereus (*) / Bacillus cereus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CFU/g | 10 | AOAC 980.31 |
| 7 | Tổng số bào tử nấm men nấm mốc / Total spores of yeasts and moulds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CFU/g | 10 | Ref. TCVN 8275-2 : 2010 (ISO 21527-2 : 2008) |
| 8 | Cadimi (Cd) (*) / Cadmium (Cd)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mg/kg | 0.007 | TS-KT-QP-02:2018(Ref. TCVN 10912:2015 AOAC 2015.01 FDA 4.7 version 1.1 (3/2015)) |
| 9 | Chì (Pb) (*) / Lead (Pb)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mg/kg | 0.003 | TS-KT-QP-02:2018(Ref. TCVN 10912:2015 AOAC 2015.01 FDA 4.7 version 1.1 (3/2015)) |

**TSL SCIENCE CO.,LTD**
**Trụ sở HCM:** 592A Cộng Hòa, Phường 13, Quận Tân Bình, TP Hồ Chí Minh, Việt Nam
**Chi nhánh Cà Mau:** Số 11 Đường 3/2, Phường 5, TP Cà Mau, Việt Nam
**Chi nhánh Hà Nội:** Số 17, Liền kề shophouse D1 tại khu D, Khu đô thị mới Lê Trọng Tấn, Phường Dương Nội, Quận Hà Đông, TP Hà Nội, Việt Nam
**Telephone:** (+84) 28.3810.4336 **Website:** http://tsl-net.com.vn
1. Kết quả phân tích chỉ có giá trị trên mẫu thử nhận được từ khách hàng, tên mẫu theo khách hàng gửi / *Testing results in this test report are valid only for the sample(s) as received, sample's name as indicated of client.*
2. Báo cáo này không được sao chép một cách không đầy đủ hoặc không có sự chấp thuận của TSL / *This report will not be reproduced except in full, without approval of TSL.*
TS-TTCL-7.8/BM-04

**TSL** CÔNG TY TNHH KHOA HỌC TSL
TRUNG TÂM KIỂM NGHIỆM TSL
ilac-MRA AOSC VLAT 1.0322 ISO/IEC 17025:2017

KẾT QUẢ THỬ NGHIỆM
*TEST REPORT*
Mã số/ *Ref. No:* DVB210500692-3
Trang/ Page No: 2/2

| STT/ *No.* | Chỉ Tiêu Thử Nghiệm/ *Testing Analysis(s)* | Kết Quả/ *Result (s)* | Đơn Vị/ *Unit* | GHPH/ *LOD* | Phương Pháp Thử/ *Test Method* |
|---|---|---|---|---|---|
| 10 | Aflatoxin $B_1$ (*) / Aflatoxin $B_1$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µg/kg | 0.45 | TS-KT-SK-38:2019 (Ref. TCVN 10638:2014) |
| 11 | Aflatoxin (tổng $B_1$,$B_2$,$G_1$,$G_2$) (*) / Aflatoxin ( sum of $B_1$,$B_2$,$G_1$,$G_2$) (*)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µg/kg | 0.45 | TS-KT-SK-38:2019 (Ref. TCVN 10638:2014) |
| 12 | Ochratoxin A / Ochratoxin A | Không phát hiện/ Not Detected | µg/kg | 1 | TS-KT-SK-41:2018 (Ref. EUR 23657 EN – 2009) |

**Chú thích/** ***Remarks:***
1.(*): Chỉ tiêu thuộc phạm vi công nhận ISO/IEC 17025:2017/ (*): Items are currently within the ISO/IEC 17025:2017 accreditation scope.
2.(**): Chỉ tiêu gửi nhà thầu phụ./ (**): Items are tested by subcontractor.
3.LOD: Giới hạn phát hiện của phương pháp./ Limited of detection.

PHỤ TRÁCH KỸ THUẬT
TECHNICAL MANAGER
NGUYỄN HỮU TRUYỀN

GIÁM ĐỐC
DIRECTOR
NGUYỄN MINH NHỰT

**TSL SCIENCE CO.,LTD**
**Trụ sở HCM:** 592A Cộng Hòa, Phường 13, Quận Tân Bình, TP Hồ Chí Minh, Việt Nam
**Chi nhánh Cà Mau:** Số 11 Đường 3/2, Phường 5, TP Cà Mau, Việt Nam
**Chi nhánh Hà Nội:** Số 17, Liền kề shophouse D1 tại khu D, Khu đô thị mới Lê Trọng Tấn, Phường Dương Nội, Quận Hà Đông, TP Hà Nội, Việt Nam
**Telephone:** (+84) 28.3810.4336 **Website:** http://tsl-net.com.vn
1. Kết quả phân tích chỉ có giá trị trên mẫu thử nhận được từ khách hàng, tên mẫu theo khách hàng gửi / *Testing results in this test report are valid only for the sample(s) as received, sample's name as indicated of client.*
2. Báo cáo này không được sao chép một cách không đầy đủ hoặc không có sự chấp thuận của TSL / *This report will not be reproduced except in full, without approval of TSL.*
TS-TTCL-7.8/BM-04

## ▶ 코로나-19에 따른 유통시장 및 구매형태 변화[7)]

### 코로나-19로 인한 '20년 베트남 도시 거주자 소비자 행동 변화

- 마트 및 식료품 방문 자제(50%), 가정 내 식량비축(45%), 온라인 쇼핑 활동증가(25%), 외부 소비활동자제(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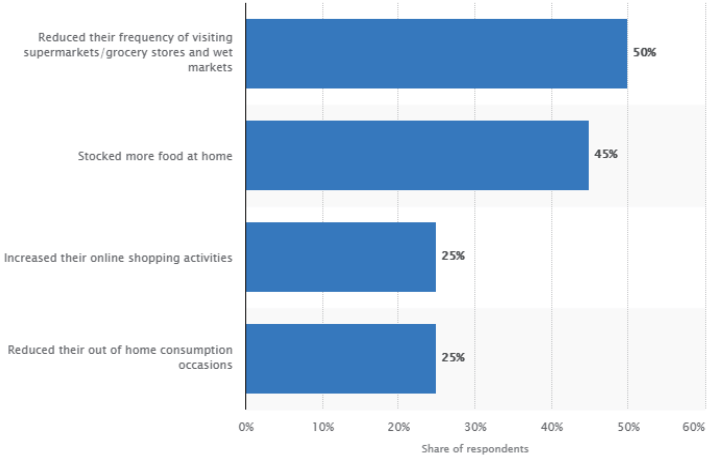


* 출처 : Statista

### 또한, 이러한 행태는 베트남 리테일 시장 하락에 영향을 끼침

- '20년 4월 베트남 리테일 시장 50% 이상 급락 후, '20년 11월 기준 전년도 대비 절반 정도 회복 (* 출처 : CEIC)

### 반면,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E-commerce의 빠른 성장 관찰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중 식품분야 '14~'19년도 연평균 성장률 최고
- 변화된 소비자 행태에 적절한 마케팅과 다방면의 접근성 확대 필요

7) 본 저작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 온라인 식품시장 현황 및 한국식품 진출확대 방안'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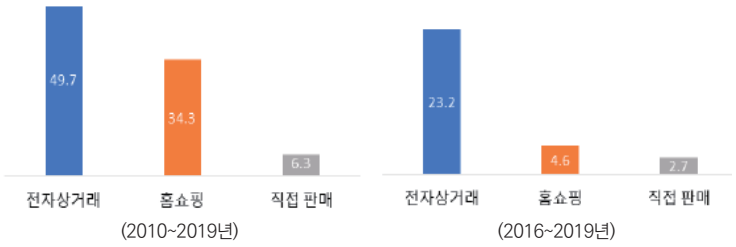


무점포 채널별 연평균 성장률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아세안 소매유통시장 진출 왜 베트남인가

2010 vs 2019년 무점포 채널별 비중(%)

- 전자상거래 이용량 급증,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의 성장

  * (온라인) Shopee, Lazada, Tiki 등 (모바일) Grab Market, BAEMIN, SPEEDL 등

- 디지털 문화에 대한 높은 접근성으로 모바일 앱 이용 비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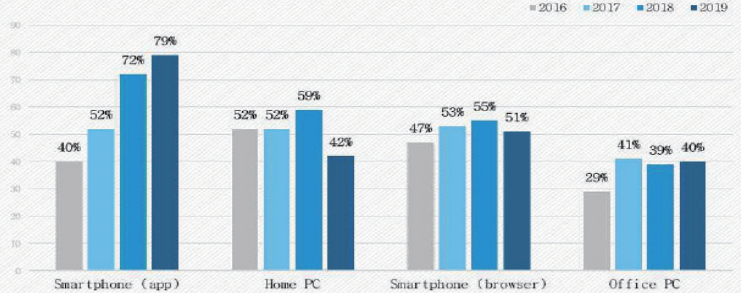


* 자료: aT, 2020베트남 이슈 보고서 온라인 식품시장

베트남 온라인 쇼핑 선호 기기

- 온라인 쇼핑 이유: 가격(1위), 배송시간(2위), 제품 다양성(3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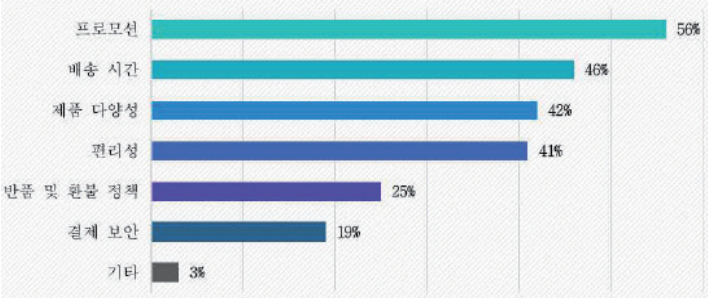


* 자료: aT, 2020베트남 이슈 보고서 온라인 식품시장

온라인 쇼핑 이유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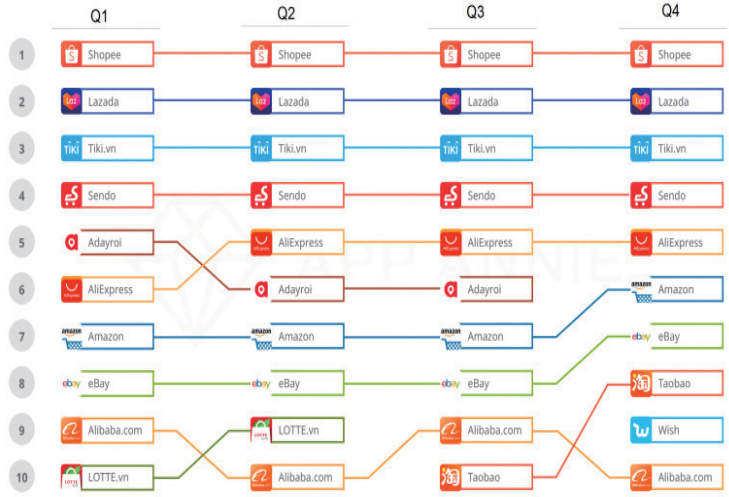


* 출처 : iPrice

2019년 베트남 이커머스 모바일앱 사용 top 10

| 유통채널 | 특 징 |
|---|---|
| Shopee | ㅇ 동남아시아 및 베트남 이커머스 1위<br>ㅇ 싱가폴 기업, 해외물류시스템(크로스보더) 구축<br>ㅇ 제품 등록 및 판매에 비교적 짧은 시간 소요<br>ㅇ 해외물류시스템(크로스보더)구축/ 빠른배송서비스(그랩)<br>ㅇ Shopee Feed 도입으로 소비자-판매자 소통 개선 |
| Lazada | ㅇ 동남아시아 및 베트남 이커머스 2위<br>ㅇ 중국 알리바바가 인수('16)<br>ㅇ 현재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운영, '12년도 베트남 진출 |
| TIKI | ㅇ 베트남 이커머스 3위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6위<br>ㅇ 베트남 토종기업, 1일/2시간 배송시스템 운영(쿠팡 로켓 배송과 유사)<br>ㅇ 젊은 소비자층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발 활발 (Shop reputation(선택적 검색) 및 라이브스트리밍 기능 등) |

주요 e-커머스 기업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

-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의 확대
  - · 높은 오토바이 이용률로 배달시장 성장 기반 확보

    * 베트남 교통수단 중 오토바이 점유율(약 72% 이상)

  - · 모바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편화, 음식 · 식품 배달 증가

    * 베트남 음식 배달 서비스: 그랩푸드(33.38%), 나우(23.16%), 배민(2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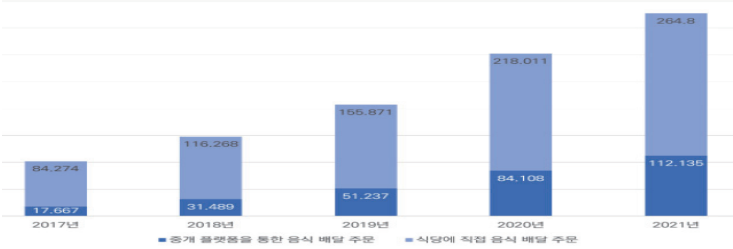


* 2020년부터는 전망치이며 코로나19 관련 변수 미포함
* 자료 : Statista

베트남 음식 배달 시장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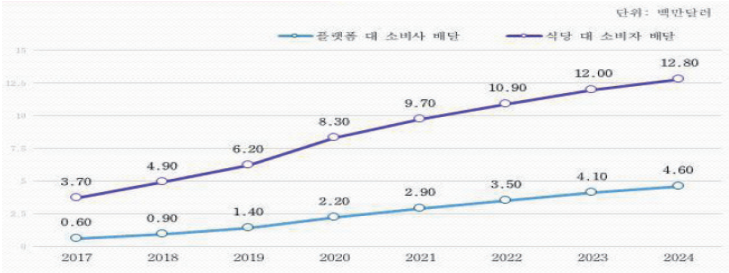


* 전망치는 코로나19 영향 반영
* 자료 : Statista, May 2020

베트남 온라인 음식 배달 사용률

| 배달기업 | 특 징 |
|---|---|
| Now.vn | ㅇ '14년 출시한 베트남 기업, 앱 다운로드 100만 이상<br>ㅇ 베트남 주요 식당 리뷰 플랫폼 Foody가 시작한 음식배달 중개 서비스<br>ㅇ Shopee와 연계하여 음식배달상품 판매 |
| Grab Food | ㅇ 싱가포르 기업으로 앱 다운로드 1억 이상<br>ㅇ 베트남 공유차량 서비스 플랫폼 Grab의 음식배달 중개 서비스<br>ㅇ 이를 통해 이미 확보한 노동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장 |
| BAE MIN | ㅇ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앱 다운로드 50만 이상<br>ㅇ 현지 음식배달 중개 서비스업체 Vietnammm를 인수하여 진입<br>ㅇ 타 기업에 비해 론칭이 늦었으나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 상승<br>ㅇ 베트남 내 공유주방 모델 운용 (Baemin Kitchen) |

주요 배달 서비스 기업

###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식품시장의 트렌드로 급부상

-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4%가 주요 관심사로 건강을 선택, 응답자 중 86%가 식품 구입 시 유기농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에 대해 구매의사가 있음을 확인 (* Nielsen survey, 19년 상반기)
- 또한 구매 결정요인에 있어 안전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에 맞춰 원산지와 원재료 성분 등의 제품 정보를 더 자세하기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 베트남 당국은 매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안전 규제를 시행
- HACCP, GMP 등 국제 인증 뿐 아니라 베트남 식품안전법에 근거한 VietGAP 인증을 통해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공

| | |
|---|---|
| | - 농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농림개발부가 발행하는 베트남의 우수 농산물 생산 표준임<br>- VietGap인증 상품에는 생산 지역명 표기 및 그린라벨 부착 |
| VietGAP | |

## 베트남 진출방안

### 가격 및 품질경쟁력 확보 최우선

- 유망신흥시장임에 따라 주요 글로벌기업의 현지진출이 완료된 상황으로 글로벌기업 및 현지기업과의 경쟁 불가피
-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동시에 소비가격 수준이 낮아 가격도 중시, 따라서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

  ⇒ 가격 관련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크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가격 프로모션/추가 사은품 증정 등 판매기획 필요

### 채널별 장 · 단점을 파악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별 진출사항 및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채널 선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편의성, 기능성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매 채널 선택 필요
- 채널별 제품의 가격, 판매촉진 협력 수준, 최소구매물량 등의 이해 필요
- 다양한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 및 현지화 마케팅으로 K-Food의 베트남 시장 연착륙 유도 필요

*** (참고) 채널별 장점**

- 전문판매점 : 품목 특성에 맞춘 마케팅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임
- 하이퍼마켓 : 저렴한 가격과 프로모션 등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
- 온라인마켓 : 시간 및 공간의 제약없이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판매가 가능

## (예시)

### 라면류

| 제 품 | 현지라면(컵) | 현지라면(봉지) | 동남아라면(봉지) |
|---|---|---|---|
| 가격/개 | 425원 | 200원 | 439원 |
| | | | |

### 음료류

| 제 품 | 코카콜라 320ml | 스프라이트 330ml | 에너지드링크 250ml |
|---|---|---|---|
| 가격/개 | 425원 | 390원 | 45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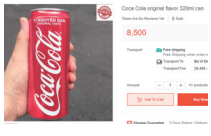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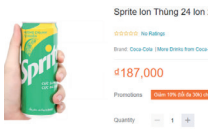  | |

### 과자류

| 제 품 | 초코파이(현지) | 초코파이(현지생산) | 커스타드(현지생산) |
|---|---|---|---|
| 가격/개 | 95원 | 215원 | 25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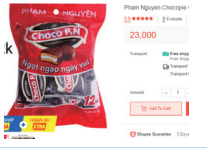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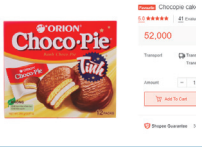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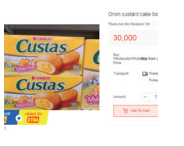  |

* '21. 7월 라자다몰 기준

현지 가격 동향

# II 수출절차

1. 수출절차 및 신고

2. 계약

3. 서류준비

4. 선적/출항

5. 수입식품 등록 및 통관

# 01 수출절차 및 신고

## 수출절차

수출계약 → 수출신용장 접수 → 수출물품 확보 → 수출통관 → 수출선적 → 출항

## 수출통관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의미

-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물품검사 → 수출신고수리

① 수출신고

- 수출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 명의로 진행
- 국외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별로, 수출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 (구비서류)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상업송장(C/I), 포장 명세서(P/L), 기타 필요 서류

② 물품검사

- 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적재전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

* 적재전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실시

③ 수출신고수리

-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가능

- (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수출자는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적재해야하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신청 필요

*** (참고) 수출신고서 작성 매뉴얼**

유니패스 홈페이지→고객센터→서비스안내→업무안내→UNI-PASS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

## 수출신고서류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내역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내용)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목적지 · 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여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C/S구분, 세번 등
- (발행) 관세청(유니패스 홈페이지)
- (기능) 세관의 수출허가증서
- (발급절차) 유니패스 직접 신청 또는 세관에 서면 제출
  - · 유니패스에서 발급하는 경우 : 수리된 수출신고서 조회→항목입력→(세관 선택 후)저장→세관에서 승인 및 고지서 생성→고지서 출력→납부→영문수출신고필증 인쇄
  - · 세관에 서면 제출하는 경우 : 수리된 수출신고서 조회→항목입력→(서면제출 선택 후) 저장→ 영문수출신고필증 인쇄(직인없음)→세관 방문 후 수수료 납부→세관 직인 날인

※ 필증 인쇄는 납부 후 3일간 가능하며 기간 경과시 삭제 후 재신청 필요

※ 수출입신고필증 전자교부시행에 따라 통관대행 관세사가 등록한 화주에 한해 출력가능. 따라서 필증 선택창이 비활성된 경우, 통관대행 관세사에 연락하여 화주 교부등록 요청 필요

# 02 계약

## 진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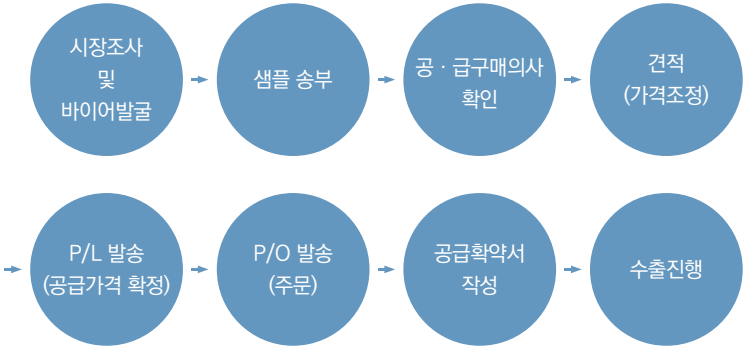


* P/L(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 가격 확정 시 수출자가 발송
* P/O(Purchase Order) : 수입자가 필요한 수량과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

(※ 계약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

# 03 서류준비

## 수출시 필요서류

### 계약서

-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단기 · 장기성 계약서(영문, 현지어)

(* 발주서(P/O)로 대체 가능)

**〈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① 운송위험 : 운송중 물품의 도난 · 상실 · 멸실로 인한 위험
② 상업위험 :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약정 기일 내 인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
③ 신용위험 :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④ 환 위 험 : 변동환율제도 하에 외국환시세 변동으로 인한 위험
⑤ 비상위험 : 계약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능해지는 위험
(* 전쟁, 정치, 행정적인 사유)

###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해상운송 시 화물의 선적 후 선사가 발행하는 선적서류로 물품을 인수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을 의미
- (내용) 선하증권의 기본정보, 물품 정보, 선박 및 운항 정보 등
- (발행)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 송하인은 수하인에게 B/L 전달,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B/L을 제시, 화물 인수
- (기능) 물품인수증, 권리증권, 운송계약의 증거

**〈 B/L의 종류 및 용어설명 〉**

| | |
|---|---|
| Original B/L | 원본 선하증권을 의미하며 3부를 1세트로 발행 |
| Check B/L (=Draft B/L) | Original B/L 발급 전 내용검토를 위해 발행하는 확인용 B/L |
| Master B/L |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 |
| House B/L | Master B/L을 토대로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 |
| Surrender B/L | 신속한 인수를 위해 원본을 대신하여 화물을 찾을 수 있는 B/L |
| Shipping B/L (=On Board B/L) |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한 뒤 발행하는 B/L |

## 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선적할 화물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송장의 내용을 보완하는 문서
- (내용) 포장 및 각 포장단위별 명세와 순중량, 총중량, CBM 등
- (발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
- (기능) 통관절차 심사자료, 검수 기준자료 등

##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매매계약 이행 사실 및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명시하는 문서
- (내용) 운임조건(인코텀즈), 거래상품의 내용, 단가 및 총액 등
- (발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
- (기능) 대금 청구서, 매입 명세서, 과세가격 증명자료 등

## 식품위생허가서

- 공인된 시험기관이 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에 대해 발급한 시험결과서(* 상황에 따라 대사관 인증 필요)
- (발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베트남 현지 시험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급방법)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 상담서비스 사이트 내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영문증명서 신청] 클릭
→ 화면 우측하단 [관할청] 선택, 신청 클릭
→ 민원접수등록 → 신청인 정보 입력
→ 4개 탭 정보입력 (※ 신청내역 탭에서 [위생증명서] 선택)
→ 첨부서류 등록 및 제출 → 접수증 및 증명서 출력

발급절차안내
바로가기

② 베트남 현지 시험기관

· (발급방법) 베트남 대표 식품위생허가서발행기관(NIFC) 등에 신청

NIFC(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준비서류: 제품샘플, 식품위생허가신청서
- 서류 처리기간: 약 7~10일 소요
- 홈페이지 : http://nifc.gov.vn

※ 상황에 따라 ①, ② 모두 요구

##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특정 물품이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시 간소화 가능

- (내용) 당해 협정이 규정하고있는 원산지 규정, 발행주체 등
- (기능) 역외국가의 무임승차 방지, 협정국간 무역원활화 등
- (발급기관) FT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등

  * 우리나라 발급기관: 관세청(Uni-Pass) 및 대한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센터)

- (발급방식)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FTA에 따라 확인 필요

| | |
|---|---|
| 기관발급 | 원산지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세당국, 그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 |
| 자율발급 | 수출자, 생산자가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 |

* 한-베, 한-아세안 FTA : 기관 발급 필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이 정한 기간동안 보관

**〈수출물품 FTA 활용절차〉**

① FTA 발효국 확인 → ② 품목번호 확인 → ③ FTA 관세혜택 확인
→ ④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⑤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⑥ 관련서류 보관

**〈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

〈발급 전 확인사항〉

(1) 수출품의 HS Code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 확인서 이용

(2) 수입국의 HS Code
국내 HS Code와 베트남의 HS Code 일치 여부 확인

(3) 한-베트남 FTA양허세율
수출품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을 확인

(4) 원산지 기준 및 충족여부
HS Code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

〈구비서류〉

(1) 수출신고필증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2) 상업송장(C/I)/패킹리스트(P/L)

매매계약 조건 이행을 증명/물품의 중량, 포장단위 등을 표시

(3) 원산지(포괄)확인서

물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할 경우 필요

(4) 원산지 소명서

생산자/수출자 정보, 물품명세, 원재료명세 등 원산지에 대한 검토사항 기재

(* 발급기관 요청 시 원산지소명서 입증 자료 제출필요)

##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

- 해당업체의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급방법)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 상담서비스 사이트 내 신청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영문증명서 신청] 클릭
    → 화면 우측하단 [관할청] 선택, 신청 클릭
    → 민원접수등록 → 신청인 정보 입력
    → 4개 탭 정보입력 (※ 신청내역 탭에서 [자유판매증명서] 선택)
    → 첨부서류 등록 및 제출 → 접수증 및 증명서 출력

발급절차안내
바로가기

## 수입허가서(CÔNG BỐ)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급기관) 베트남 식약처(VFA; Vietnam Food Administration)
- (신청방법) 바이어/현지법인이 VFA에 발급 신청
- (준비서류) 식품위생허가서,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 (제품샘플) 포장 제외 300mL(300g) 이상 필요

  ※ 일반식품, 건강식품에 따라 제출서류 및 소요시간 상이
- (서류구성)
  - · Certificate of Conformity Declaration(Bản công bố sản phẩm)
  - · Product infomations in detail(Bản thông tin chi tiết)
  - · Analytical Result(Kết quả kiểm nghiệm)
  - · Lable Sample(Mẫu nhãn thực của sản phẩ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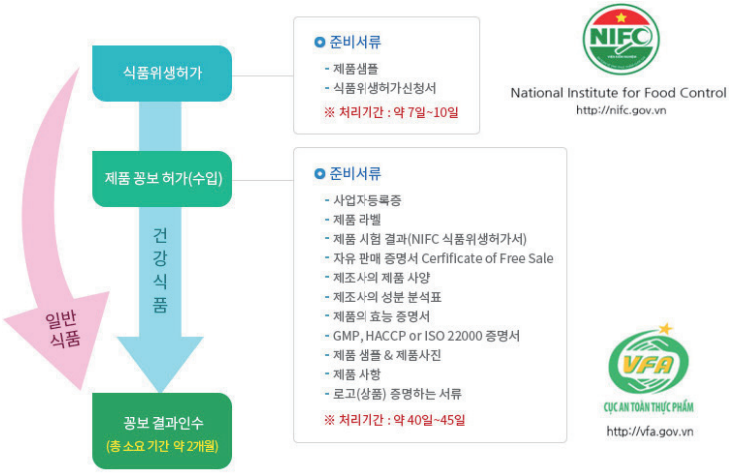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홈→업무안내→수출지원→新남방데스크→베트남→수출절차 및 수출정보)

수입허가서 발급 체계도

## 제조 및 품질관리 증명서

- 정해진 규격 또는 인증제도에 따라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HACCP, FSSC22000, ISO9001, ISO22000, GMP 등

| 제조 및 품질관리 증명서 종류 | |
|---|---|
|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 ·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
| FSSC 22000 (식품안전시스템인증) | 식품안전과 보안에 관한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시스템 |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 |
|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
| GMP (우수건강기능식품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

## [참고] 베트남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필요 서류

| | | |
|---|---|---|
| 식품 | 검역증명서 | (발급) 각 해당 부처(식약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br>(내용) 수출품의 인보이스, P/L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br>축산/수산/식물의 경우 검역 증명 후 통관 가능 |
| | 관련 인증서 |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인증기관<br>(내용) 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증명서(HACCP, ISO 인증 등) |
| | 자유판매증명서 |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br>(내용) 해당업체의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 |
| | 성분분석표 | (발급) 신청기업이 준비 (제조사 자체 양식 또는 분석표 사용)<br>(내용) 모든 성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br>제품 패키지에 작성되는 성분목록과 일치 |
| | 기타 | 제품 제조공정도와 포장상세, 샘플 2개 |

| | | |
|---|---|---|
| 건강기능식품 | 위임장 및 승인서 | (발급) 신청기업이 준비 (현지 수입 바이어 필요)<br>(내용) 수입 판매업자에게 수입/등록/유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br>제품등록 시 필수 서류 |
| | GMP 인증서 | (발급) 관련 인증기관에서 발급 후 베트남 대사관 공증필요<br>(내용) 필수 인허가 서류로, 해외 제조업체의 GMP 인증서류를<br>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신고해야 함 |
| |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 |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br>(내용) 수출면장,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검사성적서 제출 후<br>발급 |
| | 자유판매증명서 |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br>(내용) 해당업체의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 |
| | 샘플 | (제품) 수출할 제품과 포장, 용량까지 동일한 제품 샘플 준비<br>(용량) 300g 또는 300mL 이상으로 2개 이상 |
| | 기타 | 상품라벨 및 포장 디자인, 전성분표, 유기농 인증(선택) 등 |

## 서류 이미지(예시)

### 수출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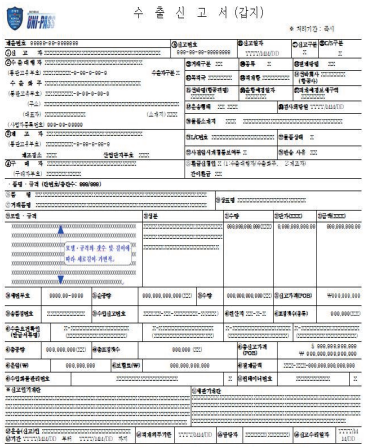

수 출 신 고 서 (갑지)

### 계약서(sales Contract)

ABC CO., LTD

Address :
Tel :
Fax :
E-mail :

Contract Date :
Contract NO. :

SALES CONTRACT

ABC CO., LTD., as seller, hereby confirms having concluded the sales contract with you(your company), as Buyer, to sell following goods on the date an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after set forth. The Buyer is hereby requested to sign and return the original attached.

| COMMODITY DESCRIPTION | QUANTITY | UNIT PRICE | AMOUNT |
|---|---|---|---|
| | | | |

Marking

Time of Shipment :
Port of Shipment :
Port of Destination :
Payment :
Insurance :
Packing :
Special Terms & Conditions :
Subject to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on back hereof :

Accepted by
(Buyer)

(Signature)
(Name & Title)
Date

ABC CO., LTD.
(Seller)

(Signature)
(Name & Title)
Date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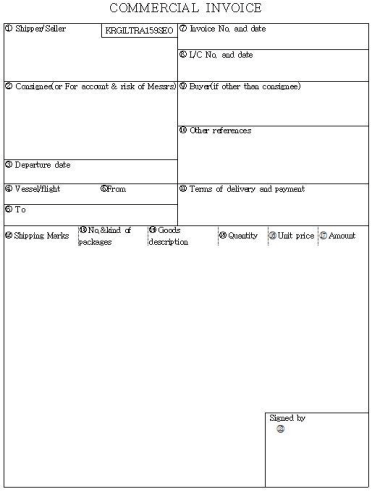

COMMERCIAL INVOICE

① Shipper/Seller KRGILTRA1593EO
② Consignee(or For account & risk of Messrs)
③ Departure date
④ Vessel/Flight ⑤From
⑥ To
⑦ Invoice No. and date
⑧ L/C No. and date
⑨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⑩ Other references
⑪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⑫ Shipping Marks ⑬ No.&kind of packages ⑭ Goods description ⑮ Quantity ⑯ Unit price ⑰ Amount
Signed by

### 선하증권(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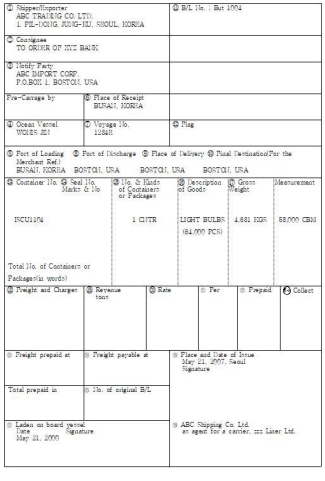

Bill of Lading

① Shipper/Exporter:
ABC TRADING CO. LTD.
1. PIL-DONG, JUNG-GU, SEOUL, KOREA
② B/L No. : Bst 1704
③ Consignee
TO ORDER OF XYZ BANK
④ Notify Party
ABC IMPORT CORP.
P.O.BOX 1. BOSTON, USA
Pre-Carriage by
⑤ Place of Receipt
BUSAN, KOREA
⑥ Ocean Vessel
YOUES 201
⑦ Voyage No.
1234N
⑧ Flag
⑨ Port of Loading
Merchant Ref.
BUSAN, KOREA
⑩ Port of Discharge
BOSTON, USA
⑪ Place of Delivery
BOSTON, USA
⑫ Final Destination(For the
BOSTON, USA
⑬ Container No. ⑭ Seal No. Marks & No. ⑮ No. & Kinds of Container or Packages ⑯ Description of Goods ⑰ Gross Weight Measurement
INCU1104 1 CNTR LIGHT BULBS (64,000 PCS) 4,681 KGS 68.000 CBM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s)
⑱ Freight and Charges ⑲ Revenue tons ⑳ Rate ㉑ Per ㉒ Prepaid ㉓ Collect
㉔ Freight prepaid at
㉕ Freight payable at
㉖ Place and Date of Issue
May 21, 2007, Seoul
Signature
Total prepaid in
㉗ No. of original B/L
㉘ Laden on board vessel
Date
May 21, 2000
Signature
㉙ ABC Shipping Co. Ltd.
as agent for a carrier, ㎜ Liner Ltd.

##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 | |
|---|---|
| ① Seller | ⑧ Invoice No. and date |
| ② Consignee(or For account & risk of Messrs.)<br><br>③ Notify Party | ⑨ Buyer(if other than consignee)<br><br>⑩ Other references |
| ④ Departure date | |
| ⑤ Vessel/flight ⑥ From | |
| ⑦ To | |

| ⑪ Shipping Marks | ⑫ No.&kind of packages | ⑬ Goods description | ⑭ Quantity or net weight | ⑮ Gross Weight | ⑰ Measurement |
|---|---|---|---|---|---|
| | | | | | |

////////////////////////////////////////////////////////////////////////////////////////////////////

Signed by
⑰

## 원산지증명서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Reference No.<br>**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r>(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br>FORM AK<br>Issued in ______<br>(country)<br>See Notes Overleaf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br>Departure date:<br>Vessel's name/Aircraft etc.:<br>Port of Discharge | 4. For Official Use<br>☐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br>☐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br>.................................<br>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5. Item number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br>.................................<br>(Country)<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br>.................................<br>(Importing Country)<br>.................................<br>Place and date,<br>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12. Certification<br>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br>.................................<b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 |

## 자유판매증명서

발급번호 : 123Q-THA2-Y

식품의약품안전처

#166, Cheongsa-ro, Seo-gu, Daejeon, Korea, Tel:+82-42-480-8710, Fax:+82-42-480-8715

Certificate No. : MFDS FID - 202

**CERTIFICATE OF FREE SALES**

MM/DD/YY : 08/18/20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in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without any restriction according to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제조사명과 주소
  Bunseong-gun, Chungcheongbuk-do, Rep. of KOREA
- Country of destination : Vietnam 수출하는 나라명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수출하는 회사명과 주소
  Gwangju,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수입하는 회사명과 주소
  Khiem, phuong 3, District, Hochiminhcity
- Remarks : Purpose of Prior Consultation before Export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ignature :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Division
Daejeon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 식품위생허가서

ISSUE NO: 12BN-Ø38V-K5OX-D7VZ-AP5E

식품의약품안전처

#166, Cheongsa-ro, Seo-gu, Daejeon, Korea, Tel:+82-42-480-8710, Fax:+82-42-480-8715

Certificate No. : MFDS FID - 2019024937

**HEALTH CERTIFICATE**

MM/DD/YY : 05/10/19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in a sanitary manner and are 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Food Sanit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PRESTIGE LAVER CO.,LTD
  139 Huirisan-gil,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Korea
- Country of destination : China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Prestige Laver Co.,Ltd.
  139 Huirisan-gil,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Korea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Shanghai Shulin International Trade Co., Ltd.
  2299 A71, world trade mall, yanan west road, Shanghai , China
- Remarks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ignature : Shin Dong Hwa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Division
Daejeon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This certificate was issued by internet and can be verified at Food Safety Korea Site(http://www.foodsafetykorea.go.kr)

| 제조증명서(HACCP, GMP등) | 수입허가서(꽁보) |
| --- | --- |
| | |
| **보험가입증명서** | **베트남어 라벨** |
| | |

※ 상황에 따라, 요청 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

## 베트남 식품 라벨링

### 관리 체계

- 라벨링 규정뿐만아니라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표절차, 안전검사, 광고, 원산지 추적 등의 주제에 대해 상세히 규정
- (상위기관) 베트남 과학기술부
- (법률체계)
  ① 「신규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ND-CP)」공표('17년)
    · (목적) 기존의 라벨링 제도 대체 및 강화
    · (주제) 라벨링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 (내용) 베트남 내 수입 ·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신규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라벨 부착을 요구
  ② 「세부 시행규정(Decree 15/2018/ND-CP)」공표('18년)
    · (목적) 식품안전 문제해결과 식품안전법 강화
    · (주제) 신규 표기 면제사항 및 신규 표기사항
    · (내용) 구체적인 라벨링 규정 및 기준 제시, 라벨링 외 식품안전과 관련된 주제들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 공표절차, 안전검사, 원산지 추적 등)
- (라벨검사) 정기 검사와 주제별 검사, 불시 점검에 따라 시행

> * 정기 검사: 매년 12월 10일 이전, 담당 부서의 정기 계획에 따라 점검
> * 주제별 검사: 현안, 기간 등 주제별로 나누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점검
> * 불시 점검: 비정상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 입수 시 해당 제품을 점검

### 라벨링 규정

- 성실성, 명확성, 정확성을 보장하며 상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반영
- (적용범위) 수입품을 포함하여 베트남 내 유통되는 상품

  * (예외) 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 (책임주체) 제조 또는 수입 또는 유통하는 단체 및 개인
- (표시사항) 필수 표시사항과 일부 유형 표시사항으로 구분되며 각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자세한 표기방식 확인 필요

## 〈 필수 표시사항 〉

### 상품명

- 필수 정보 중 가장 크게 표기
- 성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해 상품명을 작성한 경우 성분의 중량 명시할 것

### 상품에 책임이 있는 단체 및 개인 정보

- 상품 책임기관의 명칭과 주소 표기 시 축약 불가
- 베트남 내 유통하는 수입 상품은 제조자와 수입자 정보 모두 표기

### 원산지

- 상품을 제조 · 수입하는 단체 및 개인은 자체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 기재
- '~에서 생산', '~에서 제조', '생산국', '원산지'의 형태로 기재

## 〈 일부 유형 필수 표시사항 〉

### 중량

- 베트남 법에 따라 측정단위를 표기
- 신규 라벨링 규정(Decree 43)의 [부록2] 참고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신규 라벨링 규정(Decree 43) [부록3 항목1]에서 규정
- 일-월-년(양력) 순서로 표기(다른 순서로 표기할 경우 베트남어 주석 필요)

## 〈 라벨링 기준 〉

### 라벨 위치

- 라벨 내용의 인식이 가능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

  * 외부 포장을 열 수 없는 경우 외부 포장에 위치

### 라벨 크기

-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식품의 필수 표기사항 문자 높이: 1.2mm 이상
- 라벨을 부착할 표면적이 80cm2 미만일 때 문자 높이: 0.9mm 이상

### 표시 형태

-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크기로 라벨의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

  * 그림, 부호 또는 기호 등의 경우 선명한 색상 사용

- 베트남어 문자 크기는 외국어보다 크게 기재

### 표시 언어

- (필수 사항) 원문라벨 내용과 상응하며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재
- (선택 사항) 베트남어로 번역 불필요, 라벨상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
- (기타) 화학 공식, 약품 성분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명 또는 학명 기재

### 보조 라벨

- 원문 라벨에 기재된 필수 사항과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여 베트남어로 기재
- 추가로 표기된 내용 또한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과 의무 발생
- 未수출용 또는 수출 후 베트남으로 반환된 상품은 '베트남에서 생산'임을 기재

---

* 원문라벨 : 제품이 생산된 국가의 언어로 된 라벨
* 보조라벨 : 원문라벨의 필수내용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

---

## (예시) 베트남어로 표기된 한국제품들

(제품포장)

(내부 재료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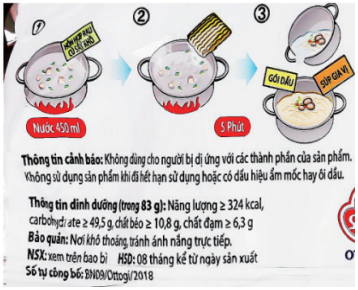


(조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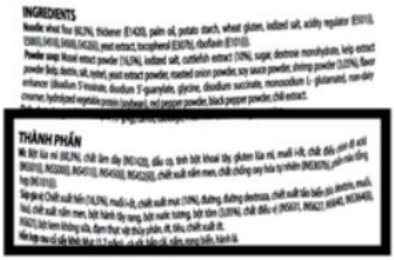


(원재료명 및 원산지)

(인증라벨)

(조리법 및 활용예시)

# 04 선적/출항

## 인코텀즈(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의 공통된 해석의 기준
- 인도 · 위험 · 비용의 분기점에 따라 분류되는 조건에 따라 물품의 인도, 위험(책임)의 양도지점 등을 결정

**인코텀즈의 분류**

| 구분 | 인도 | 위험이전 | 비용이전 | 조건 |
|---|---|---|---|---|
| E그룹 | 작업장 | 작업장 | 작업장 | EXW |
| F그룹 | 선적지 | 선적지 | 선적지 | FCA, FAS, FOB |
| C그룹 | 선적지 | 선적지 | 도착지 | CIF, CFR, CIP, CPT |
| D그룹 | 도착지 | 도착지 | 도착지 | DDP, DPU, DAP |

**주사용 인코텀즈 내용**

| |
|---|
|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 (비용) 물품을 작업장(선적지)에서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 부담<br>(위험) 물품 인도 이후 도착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
|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 (비용) 적재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매도인 부담 (보험료 제외)<br>(위험) 선적항 본선에서 인도시까지 매도인 부담, 인도 이후 매수인 부담 |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 (비용) 적재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매도인 부담<br>(위험) 선적항 본선에서 인도시까지 매도인 부담, 인도 이후 매수인 부담 |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 (비용)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기까지의 운임 매도인 부담<br>(위험) 본선에 물품을 선적 후 매도인의 인도의무 해제, 이후 매수인 부담 |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
| (비용) 보험료, 내륙비, 수입통관비 등 인도지점까지 발생되는 모든 운임 매도인 부담<br>(위험) 선적부터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최대의무를 부담 |

# 05 수입식품 등록 및 수입통관

## 베트남의 수입식품 등록

-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 상이
- 식품안전성에 대해 공표 후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
- (식품안전성 등록 방법)

① 대부분의 일반식품의 경우

: 기업이 자체적으로 식품안정성 공표 후 보건부에 등록

② 일반식품 등록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 베트남 행정기관을 통해 식품안정성 공표 후 등록

(* 36개월 미만의 영 · 유아 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수출용 생산 · 가공품 등)

**식품 종류에 따른 등록 기관**

| 보건부 | 농업농촌개발부 | 무역산업부 |
|---|---|---|
| - 가공식품 및 음료<br>- 건강기능식품<br>- 식품 첨가물 | -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br>- 과일 및 야채<br>- 어류 및 육류 | - 주류(알콜음료)<br>- 우유류<br>- 식물성요일 |

## 수입 통관

- 베트남의 통관 및 관세제도 담당 :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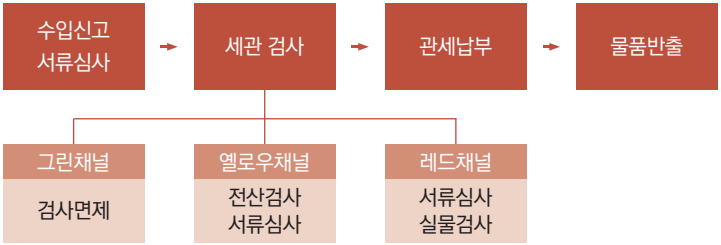


※ 통상적으로 5~7일 소요, 신규 진출 제품의 경우 보통 레드채널이 적용됨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

- 통관 시 유의사항
  - (CODE 분류 사전확인) FTA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와 베트남 수입통관 시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적용 불가
    * 필요시 베트남 관세청을 통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FTA 원산지 증명서 관련) 베트남은 수입 통관 시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원본제출 필수,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및 환급 불가
  - (통관 지연)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5~7일이 소요되어 식품 수입 기업에 애로가 발생하므로 제품선별 및 관리 중요

## 세관 검사

- 수입품의 위험도에 따라 3가지 채널로 분류하여 진행

**베트남 세관검사 분류**

| 위험도 | 채널종류 | 내용 |
|---|---|---|
| (낮음)<br>↕<br>(높음) | 그린 | (대상) 저위험 물품<br>세관 서류 및 물품검사 면제, 전산신고만으로 수리가능 |
| | 옐로우 | (대상) 관세법을 준수하는 수입업자<br>세관의 요청시에만 물품검사 시행, 전자 또는 원본서류 제출 |
| | 레드 | (대상) 고위험 물품<br>전수검사 대상, 무작위로 수입 물품 수량의 5% 또는 10% 검사 |

* 베트남에 수출하는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처음 5회는 연속으로 검사를 진행 이후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 확인 후 1년간 검역 면제 가능

## 품목별 검역절차

- 베트남의 식품 검역 담당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FA)

### 가공식품

① 상품도착 5일 전까지 보건부 또는 공공의료위생원에 서류제출
- (필요서류) 검역검사신청서, 품질기준 사본, 통관 서류 사본 등

* 품질기준 미공표 식품의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 검사보고서 제출

② 검역기관의 서류심사 및 검사예정방법 확인, 업체에 검사일정 통지

③ 수입 제품의 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을 검사

④ 샘플분석 후 베트남품질기준(TCVN)에 부합여부확인, 결과 통지

### 축산물(낙농제품 포함)

※ 현재 육류 함유량이 20% 이상 육가공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닭고기 및 그 부산물로 가공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가능

① 수출 전 베트남 수의부(DAH)에 검역 수속 등록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 제출 필요)

② 베트남 수의부(DAH),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권고 및 세계 유행병 상황 검토 후 5일 이내 수입검역허가증 발급

③ 베트남 현지에 화물 도착 시, 국경 수의센터에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증명서 발급 후 통관

## 베트남 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관련

※ 공공누리에 따라 Kati 농식품수출정보의 공공저작물 이용

## 베트남 라벨링 규정 관련

※ 공공누리에 따라 Kati 농식품수출정보의 공공저작물 이용

## 필요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무역통상정보 → 무역서식에서 확인가능
https://www.kita.net

# III FTA활용

1. FTA 단계별 수출활용

2. 활용 가능 FTA

3. 품목분류 기본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5. 원산지인증수출자

6. 원산지증명서 발급

7. 서울세관 중소기업 주요 지원사업

# 01 FTA 단계별 수출 활용

FTA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부터 원산지검증 대응까지 준비

## 수출활용 절차

| | | | | | | |
|---|---|---|---|---|---|---|
| FTA협정확인 | → | 수출물품 품목분류 | → | FTA관세 혜택확인 | → | 원산지 결정기준확인 |
| 원산지 증빙서류준비 | → | 원산지 증명서발급 | → | 서류보관 | → | 원산지검증 대응 |

**Check Point** 협정적용을 위한 8가지 단계별 확인 사항

| |
|---|
| ① FTA협정 확인 |
| 수출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협정을 확인 |
| ② 수출물품 품목분류(HS6단위) |
| FTA 활용을 위한 중요한 단계, 품목분류는 물품에 품목번호(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
| ③ FTA관세 혜택확인 |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br>– 관세혜택 : (상대국 일반세율 – FTA 특혜세율) × 수출금액 |
| ④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 원산지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뉨, 품목별 기준은 HS6단위 기준으로 확인 |
| ⑤ 원산지증빙서류 준비 |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
| ⑥ 원산지증명서 발급 |
|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될 경우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br>–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는 기관 발급(세관, 상공회의소) |
| ⑦ 서류보관 |
|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 |
| ⑧ 원산지검증 대응 |
|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검증요청대상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 요청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 |

## FTA 더 알아보기

### I 원산지규정 일반

| 구 분 | | 종 류 |
|---|---|---|
| 일반기준 (GR) |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
| | 특례규정 |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간접재료, 대체가능물품, 부속품 · 예비 부분품 · 공구, 소매용 포장 · 용기, 세트물품 등 |
| 품목별 기준 (PSR) | 개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

일반기준(General Rule)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며, 품목별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각칙의 성격을 갖는다. 양자 모두를 충족해야 원산지로 인정 받음

### II FTA 용어 해설

1. 기본원칙

| | |
|---|---|
| 완전생산기준 |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 |
| 역내가공원칙 | 어떤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
| 충분가공원칙 |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해당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 직접운송원칙 | 협정국인 수입당사국을 목적지로 하여야함, 단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일정조건(하역, 재선적 등)을 충족할 경우 FTA 인정 |

2. 특례규정

| | |
|---|---|
| 누적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상품, 재료 등)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에서 한국 생산자가 수입한 베트남산 원재료와 국내에서 구매한 한국산 원재료로 상품을 생산할 경우 베트남산 원재료를 한국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결정<br>※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 재료누적(O), 공정누적(X) |
| 최소허용기준 (미소기준) |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 구 분 | 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 |
|---|---|---|
| 농수산물 | 물품 가격(FOB) 대비 10% 이하 | 물품 가격(FOB) 대비 10% 이하 |
| 일반제품 | 물품 가격(FOB) 대비 10% 이하 | 물품 가격(FOB) 대비 10% 이하 |
| 섬유제품 | 물품중량 대비 10% 이하 | 물품 중량 또는 가격(FOB) 대비 10% 이하 |

<table>
<tr><td>간접재료</td><td>물품의 생산 · 시험 · 검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당해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촉매, 에너지, 윤활제 등)을 말하며 중립요소라고도 함<br><br><table><tr><th>구 분</th><th>한-아세안 FTA</th><th>한-베트남 FTA</th></tr><tr><td>세번변경기준</td><td>고려하지 않음</td><td>고려하지 않음</td></tr><tr><td>부가가치기준</td><td>제조간접비에 계상</td><td>제조간접비에 계상</td></tr></table><br>일반적으로 간접재료는 원산지 결정시 원재료로 보지 않으므로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도 재료로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간접비에 계상함</td></tr>
<tr><td>대체가능물품</td><td>대체가능물품은 곡물, 원유, 가스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함<br>FTA 협정에서는 원산지가 둘 이상인 대체가능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회계상 단가결정 방법인 재고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td></tr>
<tr><td>부속품 · 예비<br>부분품 · 공구</td><td>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부속품 · 예비 부분품 및 공구는 기계 · 기구 · 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 가치가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br><br><table><tr><th>구 분</th><th>한-아세안 FTA</th><th>한-베트남 FTA</th></tr><tr><td>세번변경기준</td><td>고려하지 않음</td><td>고려하지 않음</td></tr><tr><td>부가가치기준</td><td>고려하지 않음</td><td>고려하지 않음</td></tr></table></td></tr>
<tr><td>소매용 포장 · 용기</td><td>본체인 완제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 및 용기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br>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 및 용기를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에 포함<br><br><table><tr><th>구 분</th><th>한-아세안 FTA</th><th>한-베트남 FTA</th></tr><tr><td>세번변경기준</td><td>고려하지 않음</td><td>고려하지 않음</td></tr><tr><td>부가가치기준</td><td>원산지별 재료비 계상</td><td>원산지별 재료비 계상</td></tr></table><br>※ 운송용 포장 · 용기는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 모두 고려하지 않음</td></tr>
<tr><td>세트물품</td><td>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된 것을 말함, 원산지결정은 개별 물품별로 하여 세트물품도 그 구성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예외가 인정됨<br>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세트물품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한-중 및 한-EU 등 기타 FTA는 세트물품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음<br><br>[세트물품 관련 협정명 및 결정기준]<br><br><table><tr><th>협 정 명</th><th>결정기준</th><th>협 정 명</th><th>결정기준</th></tr><tr><td>한-중 FTA</td><td>FOB가격의 15% 이하</td><td>한-EFTA FTA</td><td>공장도가격의 15% 이하</td></tr><tr><td>한-EU FTA</td><td>공장도가격의 15% 이하</td><td>한-캐나다 FTA</td><td>공장도가격의 15% 이하</td></tr></table></td></tr>
</table>

3. 개별기준

①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될 때,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통상적으로 변경을 요하는 단위의 숫자가 커질수록 충족 하기가 쉽다.

| | |
|---|---|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br>(Change of Chapter) |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2단위(CC – 류)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 |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br>(Change of Tariff Heading) |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4단위(CTH – 호)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 |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br>(Change of Tariff Sub-Heading) |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6단위(CTSH – 소호)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 |

❖ HS 2,4,6 단위 이해(인스턴트 라면)

| | | | | | | | | | |
|---|---|---|---|---|---|---|---|---|---|
| 1 | 9 | 0 | 2 | 3 | 0 | 1 | 0 | 1 | 0 |
| 2단위 – 19 | | | | | | | | | |
| 4단위 –1902 | | | | | | | | | |
| 6단위 – 1902.30 | | | | | | | | | |

* HS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세계 공통으로 6단위를 사용하며,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사용(한국 10단위, 베트남 8단위)

② 부가가치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부가가치 비율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RVC법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과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MC법이 있음

| 구 분 | | 계산방법 |
|---|---|---|
| RVC법(역내부가가치기준)<br>Regional Value Contents | 집적법(BU)<br>(Build Up) | $\frac{\text{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br>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
| | 공제법(BD)<br>(Build Down) | $\frac{\text{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 \times 100$<br>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
| | 순원가법(NC)<br>(Net Cost) | $\frac{\text{순원가-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br>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
| MC법(역외부가가치기준)<br>iMport Contents |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text{공장도가격}} \times 100$<br>공장도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 |

◇ 집적법은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 유리
◇ 공제법은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 유리
◇ 순원가법은 미국, 콜롬비아 FTA에서 자동차류에 한정하여 사용

③ 가공공정 기준

협정에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고 주로 섬유류나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에 채택

④ 선택기준

개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수(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인 경우, 하나의 기준만 충족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유장과 변성유장(HS0404.10호)]

| 협 정 | 원 산 지 기 준 |
|---|---|
| 한-아세안 FT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br>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완전생산 또는 RVC45% 중 선택

⑤ 조합기준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가공치즈(HS0406.30호)]

| 협 정 | 원 산 지 기 준 |
|---|---|
| 한-아세안 FT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br>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CTH) + 비원산지 우유성분이 총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조합)

# 02 활용 가능 FTA(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 베트남은 현재 1국 2협정 체결 국가로 각 협정 이용 가능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하나의 협정만 선택하여 신청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발효 시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RECP 발효 시 한-아세안FTA, 한-베FTA, RCEP 중 유리한 FTA 선택

## ▶ 한-아세안 FTA

| 상대국 | 추 진 현 황 | | 의의 |
|---|---|---|---|
| | 협상개시 | 발효일자 | |
| 아세안(10개국) | 2005년 2월 | 2007년 6월 1일<br>(상품무역협정, 국가별 상이) |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한-아세안 FTA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맺은 FTA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번째 FTA

1) 아세안10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유일하게 상호대응세율 적용
3) 중국, 일본도 中-아세안 FTA('05년 7월), 日-아세안 CEPA('08년 12월) 발효

###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2 제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협정 부록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

한국의 민감품목의 세율이 ① 10% 초과하는 경우 ② 10% 이하인 경우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율이 다르게 부과
- 한국의 민감품목 세율이 10% 초과 : 수입국 최혜국(MFN) 세율 적용
- 한국의 민감품목 세율이 10% 이하 : 한국과 수입국 FTA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 ▶ 한-베트남 FTA

| 상대국 | | 추 진 현 황 | | 의의 |
|---|---|---|---|---|
| | | 협상개시 | 발효일자 | |
| ★ | 베트남 | 2012년 9월 | 2015년 12월 20일 | 우리의 제4위 투자국 |

한-베 FTA는 최초의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협정으로, 양국 간 불균형한 상품양허 수준을 개선

1) 베트남은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FTA 확대로 아세안 지역의 FTA 허브로 부상
2)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내 주요 투자국으로 수출 생산기지의 역할 수행
3) 베트남은 한-베 FTA 포함, 총 15건 52개국과 FTA 체결(EU27개국, CPTPP 11개국 등)

### 한-아세안FTA의 민감품목 대상으로 협상 추진, 자유화 수준 확대

| 국가명 | 기 준 | 한-아세안FTA | 추가개방 | 한-베트남 FTA |
|---|---|---|---|---|
| 한 국 | 수입액 | 91.7% | 3% | 94.7% |
| | 품목수 | 11,169개 | 499개 | 11,668개 |
| 베트남 | 수입액 | 86.3% | 6.1% | 92.4% |
| | 품목수 | 8,245개 | 272개 | 8,517개 |

### 한-베트남 FTA 활용

(민감품목) 한국은 조미김을 기타의 조제식료품(HS2106.90)으로 운영하였으나, '17년 9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식물의 기타 조제품(HS2008.99)로 결정

→ 한국산 조미김(민감품목)을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한-아세안 FTA(5%) 대신 한-베트남 FTA(0%)를 활용

## FTA 더 알아보기

###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CEPA, EPA, RCEP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

-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 한-인도 CEPA 등

- EPA(경제연계협정, Ecomomic Partnership Agreement)
  관세철폐 · 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적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협정
  - 일-멕시코 EPA, 일-EU EPA 등, 일본은 EPA 형태로 협정 체결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 · 중 · 일 3개국, 호주 ·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일본과의 첫 FTA, 전 세계 무역규모의 약 30% 가량을 차지

### FTA 체결현황('21.6.30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을 발효하였고, FTA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 발효된 FTA(17건, 57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5개국), 영국

- 서명/타결된 FTA(4건, 18개국)
  RCEP(15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캄보디아

- 이외에도 러시아 등 11개국과 6건의 FTA를 협상 중

## 발효된 FTA 현황('21년 7월 기준)

| 상대국 | 추진현황 | | | 의 의 |
|---|---|---|---|---|
| | 협상개시 | 서명 | 발효일자 | |
| 칠레 | '99년 12월 | '03년 02월 | '04.04.01.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싱가포르 | '04년 01월 | '05년 08월 | '06.03.02. |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
| EFTA (4개국) | '05년 01월 | '05년 12월 | '06.09.01. | 유럽 시장의 교두보 |
| ASEAN (10개국) | '05년 02월 | '06년 08월 | '07.06.01. (국가별 상이) |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인도 | '06년 03월 | '09년 08월 | '10.01.01. | BRICs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
| EU (27개국) | '07년 05월 | '10년 10월 | '11.07.01. | 거대 선진 경제권 |
| 페루 | '09년 03월 | '11년 03월 | '11.08.01. |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미국 | '06년 06월 | '07년 06월 | '12.03.15. | 세계 최대 경제권 |
| 터키 | '10년 04월 | '12년 08월 | '13.05.01. | 유럽 ·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
| 호주 | '09년 05월 | '14년 04월 | '14.12.12.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캐나다 | '05년 07월 | '14년 09월 | '15.01.01. | 북미 선진시장 |
| 중국 | '12년 05월 | '15년 06월 | '15.12.20.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20년 기준) |
| 뉴질랜드 | '09년 06월 | '15년 03월 | '15.12.20.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베트남 | '12년 09월 | '15년 05월 | '15.12.20. | 우리의 제4위 투자국('20년 기준) |
| 콜롬비아 | '09년 12월 | '13년 02월 | '16.07.15. | 중남미 신흥시장 |
| 중미 (5개국) | '15년 06월 | '18년 02월 | '19.10.01. (국가별 상이) | 중미 신시장 창출 |
| 영국 | '16년 12월 | '19년 08월 | '21.01.01. |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 EFTA(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5개국)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 03 품목분류 기본

FTA 활용은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부터 시작

## HS 협약과 품목분류

HS협약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약칭하여 "HS Convention(HS협약)"이라 함
- 전문, 본문, 부속서(HS 품목분류표)로 구성

### HS 협약 제정 목적

- 국제무역의 원활화
- 국제무역상의 특정한 자료의 수집 · 비교와 분석 용이
- 국제무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표의 제공 등

### HS 품목분류의 중요성

- 품목분류는 물품에 HS 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 잘못 수행할 경우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함
- 원산지결정기준 중 품목별기준(PSR)은 HS코드 6단위별로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규정
- 특히,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일 경우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를 더욱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관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HS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6단위)를 기초로 하여 이 품목을 세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함
-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영문표현은 "Harmonized System of Korea"로 "HSK"라고 약칭함(10단위)

## HS 품목분류표 구성 및 식료품 분류 구조

### HS 품목분류표 구성

HS는 통칙, 부(Section/部), 류(Chapter/類), 호(Heading/號), 소호(Sub-Heading/小號), 부 · 류 및 소호의 주(Note/註)로 구성. 6단위 소호까지는 체약당사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HS협약상의 분류체계로 국제적으로 공통 사용, 7단위 이하의 분류체계는 각 체약당사국의 실정에 맞게 추가로 세분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통칙) 품목분류 전반에 걸친 HS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 놓은 것
- (부) 물품의 범주를 나타내며, 표제(The titles of sections)가 있음
- (류) 부를 세분한 것으로 2단위 코드로 표기
- (호) 류를 세분한 것으로 4단위로 코드로 표기
- (소호) 호를 세분한 것으로 5단위 또는 6단위로 코드로 표기
- (주) 부, 류 및 호와 소호에 사용된 용어나 문구의 뜻을 명확히 하거나 그 기준과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여 분류를 명확히 하고 분류지침으로서의 역할 수행

【수직적 분류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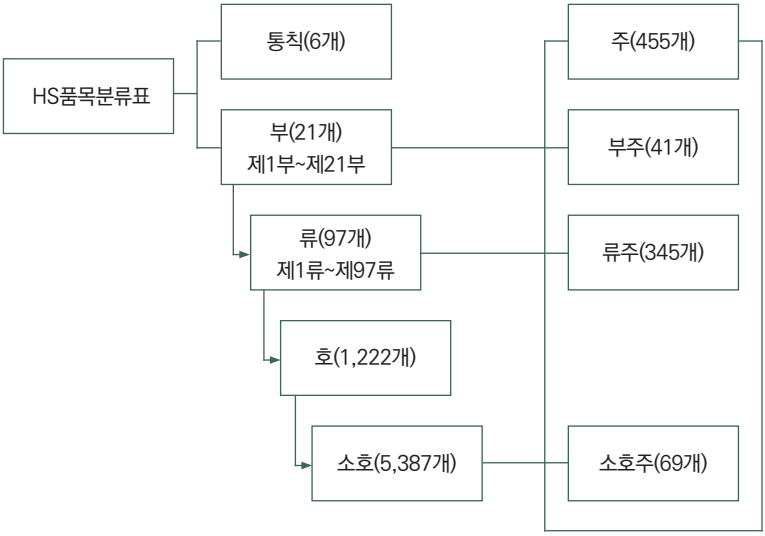

## HS 품목분류표의 3대 구성요소

HS 품목분류표의 3대 구성요소는 품목분류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통칙', '부주 · 류주 · 소호주', '호의 용어와 소호의 용어'를 말한다.

❖ 호의 용어란 4단위 코드번호와 연결하여 설정되어 있는 물품명을 말하고, 소호의 용어란 6단위 코드번호와 연결하여 설정되어 있는 물품명을 말한다.

## 식품류의 품목분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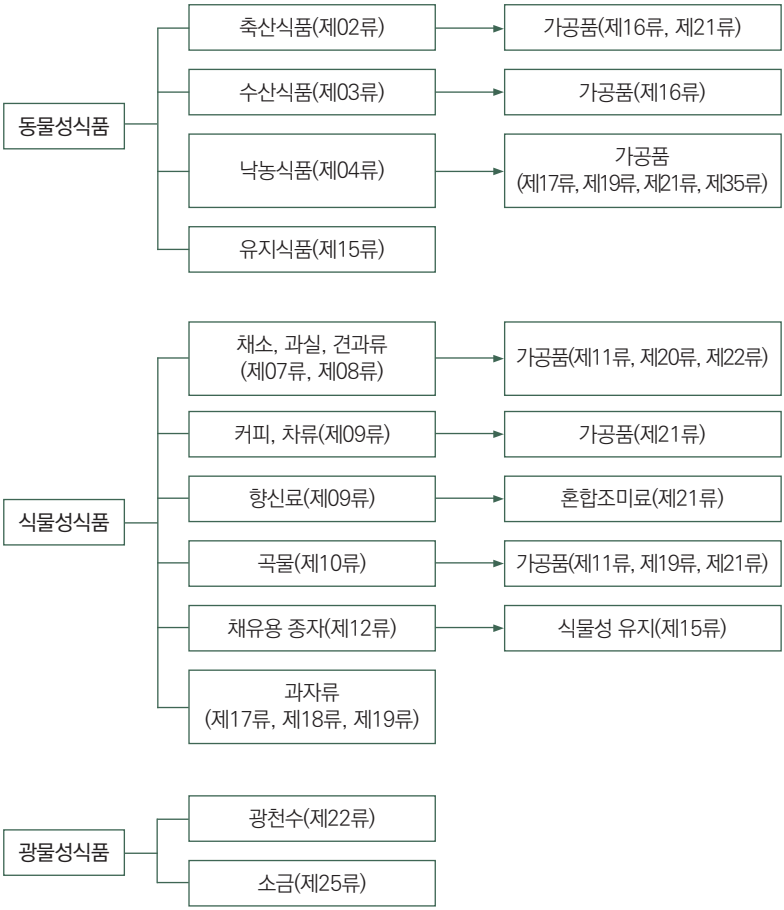


물품의 배열은 일반적으로 가공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의 순으로 되어 있음
감자(제7류) → 감자가루(제11류) → 스낵 등 조제감자(제20류)

## 제4부 구성

제4부(조제 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담배 · 제조한 담배 대용물)은 식품 수출 기업과 관련성이 깊으며 총 9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

- 제4부
  - 제16류 |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제19류 | 곡물 · 고운가루 · 전분 ·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제20류 | 채소 · 과실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제21류 | 각종 조제 식료품
  - 제22류 | 음료 · 주류 · 식초
  -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조제식료품은 관세율표 구성 체계에 따라 제1부의 동물성 생산품을 기본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제16류에 배열한다. 이어서 제2부의 식물성 생산품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식료품은 제17류부터 제21류까지 배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 최근 K-푸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라면(19류), 즉석밥(19류), 포장만두(19류), 떡볶이(19류), 김치(20류), 된장 · 고추장 등 전통발효식품 및 불고기소스, 불닭소스 등 각종 소스류(21류)는 제4부 조제식료품에 속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자가 품목번호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 접수/심사 → 신청인 사전심사 결과 회신

| 구 분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
| 처리기관 | ■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
| 신청권자 | ■ 수출입자, 수출물품 제조자,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
| 신청대상 | ■ 수출입물품 |
| 신청방법 | ■ UNI-PASS(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서면(우편, 인편) |
| 처리기간 | ■ 30일(보정시 20일 추가) |
| 수수료 | ■ 품목당 3만원(시험 ·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
| 반려사유 | ■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 · 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br>■ 냉장 · 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br>■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br>■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

### ※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확인

관세청은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 관련 가이드북을 관세청 포털에 등재

##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 이용방법

관세청FTA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main.do → e-book → FTA 활용가이드 →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제1,2편 확인

【1편 베트남 등 5개국】【2편 미국 외 15개국】

### 관련 보도자료 요약('20.2.13.)

"FTA 상대국 품목번호(HS)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 중국 등 21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발간 -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늘부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내려받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다.

이번에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전자책으로 제작 · 배포하게 된 것이다.

##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령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0.8.4.)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 ·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 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위 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2020.8.4. 개정)

## HS 더 알아보기

### I HS2022 개정 개요

HS 품목분류표는 '92년 1차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정되었으며,
'22년 1.1.부터 제7차 개정 시행('02년부터 5년의 개정주기가 정착 되고 있음)

❖ [개정 일정] 1차 개정('92.1.1.) → 2차 개정('96.1.1.) → 3차 개정('02.1.1.) → 4차 개정('07.1.1.) → 5차 개정('12.1.1.) → 6차 개정('17.1.1./ 現 HS2017)

❖ [코드 수] 제4부(조제 식료품) 16류에서 23류까지의 호 및 소호의 증감은 없음

| 구 분 | HS2017 | HS2022 | 비 고 |
|---|---|---|---|
| 4단위 | 1,222개 | 1,228개 | 6개 증가 |
| 6단위 | 5,387개 | 5,609개 | 222개 증가 |

#### 제7차 HS 개정 주요 내용(제4부 조제식료품)

| 현행(HS2017) | 개정(HS2022) |
|---|---|
| 제4부 표제<br>조제 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담배 · 제조한 담배 대용물 | 조제 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담배 ·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사람의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
| 제16류 표제<br>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
| 제16류<br>주1<br>이 류에서 제2류 · 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 설육(屑肉)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 이 류에서 제2류 · 제3류 · 제4류 제6호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 설육(屑肉)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그리고 곤충은 제외한다. |
| 주2<br>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 육 · 설육(屑肉) · 피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생략) |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 육 · 설육(屑肉) · 피 · 곤충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생략) |
| 제16류<br>소호주1<br>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 · 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중략)...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 · 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육 · 설육(屑肉) · 피나 곤충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중략)... 그 조제품에는 육 · 설육(屑肉)이나 곤충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

| 현행(HS2017) | 개정(HS2022) |
|---|---|
| 16.01<br>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屑肉) · 피나 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
| 16.02<br>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 설육(屑肉)이나 피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 설육(屑肉) · 피나 곤충 |
| 제18류<br>주1<br>1. 이 류에서 제0403호 · 제1901호 · 제1904호 · 제1905호 · 제2105호 · 제2202호 · 제2208호 · 제3003호 · 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 1. 이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br>가. 소시지 · 육 · 설육(屑肉) · 피 · 곤충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br>나. 제0403호 · 제1901호 · 제1902호 · 제1904호 · 제1905호 · 제2105호 · 제2202호 · 제2208호 · 제3003호 · 제3004호의 조제품 |
| 제19류<br>주1 가목<br>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br>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 · 육 · 설육(屑肉) · 피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br>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 · 육 · 설육(屑肉) · 피 · 곤충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
| 제20류<br>주1<br>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br>가. (생략)<br>〈신설〉<br>나. 소시지 · 육 · 설육(屑肉) · 피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br>다.~라. (생략)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br>가. (생략)<br>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제15류)<br>다. 소시지 · 육 · 설육(屑肉) · 피 · 곤충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br>라.~마. (생략) |
| 2008.93<br>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ie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Vaccinium vitis-idaea)] |
| 20.09<br>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과실 및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2009.2<br>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
| 2009.8<br>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 · 견과류 · 채소 주스 |

| 현행(HS2017) | 개정(HS2022) |
|---|---|
| 2009.81<br>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예아(Vaccinium vitis-idaea)]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주스, 링곤베리 lingonberrie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예아 (Vaccinium vitis-idaea)]주스 |
| 22.02<br>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 견과류 ·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

## Ⅱ 제4부 특이점

### 곤충 조제품 분류

HS2022에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요청에 따라 식용의 곤충을 특게한 것을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품목분류표에서 식용의 곤충은 어느 호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1류와 제2류에 분류가능하나, HS2022에서는 식용가능 · 불가능 · 조제품으로 분류(식용가능 곤충과 곤충 조제품은 가공정도에 따라 분류)

*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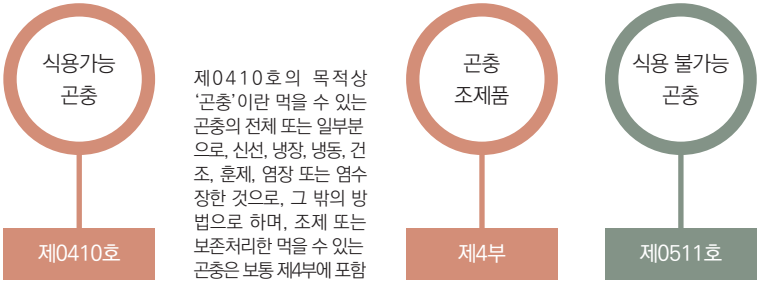


### ※ 향후 쟁점 가능성

향후 이 분야에서 "곤충"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곤충은 귀뚜라미, 메뚜기, 벌, 개미, 딱정벌레나 애벌레 종류인데 분류학상 곤충으로 분류되지 않는 절지동물(거미, 전갈, 지네 등)이 식용으로 사용될 경우 제0410호의 범위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 : 2022년 HS 개정 내용 해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참조)

# 0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동일 물품이라도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협정세율 적용

## ▶ 원산지결정기준 검색방법(관세청FTA포털, 협정문)

관세청 FTA포털 자료실 → 협정 선택 → 검색어 입력 → 원산지 기준 확인

## ▶ 협정국 관세율 조회

① 관세청 FTA포털 자료실 → 협정별 세율정보 → 국가별 관세율표 조회

②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율표 → 베트남 → 검색어 → 세율확인

※ 국가별 관세율 확인

① 관세청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②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FTA 더 알아보기

###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 K푸드'인스턴트 라면'(1902.30)

| 구 분 | 구 성 | 내 용 |
|---|---|---|
| 물 품 | 주요 원재료 | 건더기 스프(플레이크), 분말 스프, 밀가루 등 |
| | 주요 제조공정 | 원료 혼합 및 반죽 – 제면 – 유탕 – 냉각 – 포장 등 |

| | FTA 활용 | 한-ASEAN | 한-베트남 |
|---|---|---|---|
| FTA |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4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4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40) |
| | 협정세율 | AKFTA(0%) | VKFTA(0%) |
| | 활용방안 | 원재료인 야채 등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밀가루 등은 완제품인 1902호와 상이한 세번(0712호, 1101호, 2005호, 2103호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 수출 시 FTA를 적극 활용 | |

❖ 베트남의 라면에 대한 최혜국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은 35%
→ FTA 활용 실익 품목(보다 자세한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정문 참고)

【 기록으로 본 베트남 라면 시장 】

- '19년 기준 베트남 라면 소비량 54억개로 세계 5위 라면 소비국으로 등극
- 1인당 소비량은 약 57개로 한국(75개), 네팔(58개)에 이어 세계 3위
- 한국은 베트남의 라면 총 수입액 중 55.7%를 차지하는 최대 라면 수출국

[자료출처 : 코트라 하노이무역관('20.12.17. 베트남 라면시장 동향)]

##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 K푸드 '조미김'(2008.99)

| 구 분 | 구 성 | 내 용 |
|---|---|---|
| 물 품 | 주요 원재료 | 물김(날김), 카놀라유, 참기름, 소금 등 |
| | 주요 제조공정 | 양념/전처리 → 굽기 → 절단/포장 |

| | FTA 활용 | 한-ASEAN | 한-베트남 |
|---|---|---|---|
| FTA | 원산지결정기준 (CC or RVC4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C)<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4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br>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C)<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40) |
| | 협정세율 | AKFTA(0%)<br>상호대응세율(5%) | VKFTA(0%) |
| | 활용방안 | 주요 원재료인 물김(1212.21), 카놀라유(1514.19), 참기름(1515.50), 소금(2501.00) 등은 완제품과 HS 2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세번변경기준(CC)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 수출 시 FTA를 적극 활용 | |

❖ 베트남의 조미김에 대한 최혜국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은 40% → FTA 활용 실익 품목(보다 자세한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정문 참고)

### 【 베트남 김 시장 동향 】

- '19년 기준 베트남은 약 1,195만 5천 달러 규모의 조미 김 수입
- 한국이 전체 수입의 약 45%(5,424천 달러)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 한국산 김은 베트남에서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며 관심을 받고 있음

[자료출처 : 코트라 호치민무역관('20.12.31. 베트남 김 시장 동향)]

## 통계로 본 K푸드

### 코로나19에도 한국식품 수출 역대 최고 기록

'20년 한국 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43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 달성
(소비재 농산물과 조제식료품 수출실적으로, 축 · 수산물과 음료 · 주료는 미포함)

#### 성장요인

1.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보관 ·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
   - 한국식품 중 전통적 대표 수출품목인 라면은 '20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29.2% 증가하여 6억 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액 달성
     ※ '20년 식품(소비재 농산물, 조제식료품) 중 수출액 기준 1위
   - 포장만두, 즉석밥 수출도 크게 늘며 각 품목 모두 역대 최고 수출액 갱신

(단위: 백만 달러, %)

| 품목명 | '18년 | 증감률 | '19년 | 증감률 | '20년 | 증감률 |
|---|---|---|---|---|---|---|
| 라면 | 413 | 8.4 | 467 | 13.0 | 604 | 29.2 |
| 포장만두 | 31 | 25.8 | 35 | 11.1 | 51 | 46.2 |
| 즉석밥 | 17 | 36.5 | 24 | 41.3 | 37 | 53.3 |

2. 한국 문화콘텐츠(K팝스타, 먹방, 요리법 등)를 통한 한국 음식 홍보!
   - 라면은 간편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와 함께 영화 '기생충'에 등장해 주목을 받음
   - 떡볶이는 인기 케이팝 그룹을 통해 소개되면서, 인기 몰이를 이어가고 있음
   - 한국음식 관련 콘텐츠 확산으로 쉽게 따라 조리할 수 있는 각종 소스류 수요 증가

(단위: 백만 달러, %)

| 품목명 | '18년 | 증감률 | '19년 | 증감률 | '20년 | 증감률 |
|---|---|---|---|---|---|---|
| 떡볶이* | 25 | 53.0 | 34 | 39.9 | 54 | 56.7 |
| 소스류** | 110 | 4.2 | 125 | 14.3 | 167 | 33.6 |

* 쌀가공품, 쌀케이크 등 포함, ** 떡볶이소스, 불고기소스, 불닭소스 등 포함

3. 코로나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전통발효식품 수요증가!
   - 음식을 통한 면역강화를 위해 전통발효식품인 김치수출이 '20년 전년 대비 37.6% 증가한 1억 4천 5백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 또 다른 발효식품인 고추장, 된장, 간장 등 한국전통 장류 역시 성장세를 보임

(단위: 백만 달러, %)

| 품목명 | '18년 | 증감 | '19년 | 증감 | '20년 | 증감 |
|---|---|---|---|---|---|---|
| 김치 | 97 | 19.7 | 105 | 7.7 | 145 | 37.6 |
| 고추장 | 37 | 15.2 | 38 | 2.3 | 51 | 35.2 |
| 된장 | 9 | 27.0 | 9 | △1.2 | 12 | 29.1 |
| 간장 | 14 | 3.3 | 15 | 5.5 | 16 | 5.6 |

## 수출통계

### 1. '20년 수출 상위 5개국

한국 식품의 최대 수출국은 7억 9천 8백만 달러를 기록한 미국으로 '18년~'19년 3위에서 1위를 기록, 일본은 1위에서 3위로 밀려남

● 신남방 진출 교두부 국가 '베트남'은 4위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2018년 | | | 2019년 | | | 2020년 | | |
|---|---|---|---|---|---|---|---|---|---|
| | 국가 명 | 수출액 | 증감률 | 국가 명 | 수출액 | 증감률 | 국가 명 | 수출액 | 증감률 |
| 1위 | 일본 | 674 | 1.8 | 일본 | 687 | 1.9 | 미국 | 798 | 33.3 |
| 2위 | 중국 | 591 | 12.1 | 중국 | 631 | 6.8 | 중국 | 740 | 17.2 |
| 3위 | 미국 | 535 | 15.8 | 미국 | 598 | 11.8 | 일본 | 723 | 5.3 |
| 4위 | 대만 | 185 | △2.9 | 대만 | 212 | 14.4 | 베트남 | 215 | 3.5 |
| 5위 | 홍콩 | 184 | 3.2 | 베트남 | 208 | 19.8 | 대만 | 211 | △0.3 |
| 기타 | (168개국) | 1,317 | 13.0 | (168개국) | 1,399 | 6.2 | (158개국) | 1,591 | 13.8 |
| | 전 세계 (173개국) | 3,487 | 9.4 | 전 세계 (173개국) | 3,735 | 7.1 | 전 세계 (163개국) | 4,279 | 14.6 |

### 2. '20년 수출 상위 5개국의 주요 식품 수출 현황

미국은 라면, 떡복이, 즉석밥 등 다양한 품목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베트남은 포장만두, 김치, 떡볶이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

(단위 :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율 %)

| 구분 | 라면 | 포장만두 | 즉석밥 | 떡볶이 | 소스류 | 김치 | 고추장 | 된장 | 간장 |
|---|---|---|---|---|---|---|---|---|---|
| 미국 | 82,265 (+53.6) | 11,748 (+49.6) | 27,479 (+77.3) | 14,661 (+95.2) | 39,427 (+38.7) | 23,059 (+55.8) | 13,484 (+24.8) | 3,906 (+24.2) | 3,490 (+19.0) |
| 중국 | 149,096 (+19.8) | 406 (△7.3) | 1,103 (△11.3) | 2,240 (+23.7) | 36,595 (+52.0) | 304 (△21.6) | 8,803 (+54.7) | 2,214 (+50.8) | 1,264 (△20.7) |
| 일본 | 54,545 (+61.6) | 8,954 (+65.0) | 1 (△92.8) | 10,562 (+16.0) | 13,344 (+11.1) | 71,099 (+28.8) | 5,271 (+19.5) | 407 (+53.5) | 129 (+92.3) |
| 베트남 | 16,854 (△12.0) | 2,897 (+75.5) | 739 (△22.0) | 2,861 (+12.2) | 7,253 (△8.0) | 284 (+42.0) | 1,873 (△5.5) | 472 (△8.9) | 819 (△10.9) |
| 대만 | 23,573 (+18.3) | 102 (+299.6) | 628 (+44.7) | 1,028 (+45.1) | 6,406 (+63.3) | 5,871 (+22.8) | 1,711 (+33.7) | 126 (+29.0) | 960 (+73.1) |

(자료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05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으로 수출역량 강화

##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인증수출자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세관장이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인증한 수출자.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

### 업체별인증수출자

- 수출하는 모든 품목, 모든 협정에 대하여 인증혜택 부여

### 품목별인증수출자

- 인증 받은 FTA 협정 · 인증물품(HS 6단위) 한하여 인증혜택 부여

| 구 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 인증대상<br>(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br>(품목별(HS6단위),협정별) |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
| 인증기관 | 본부세관(인천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 |
| 인증기준 | 원산지를 증명할 전산처리시스템을<br>보유하거나 증명능력이 있는 자 | 원산지결정기준(HS6단위)을<br>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자 |
| 원산지<br>관리전담자 | 원산지전담자 지정 · 운영<br>교육 등 자격요건 점수 20점 이상 | 원산지전담자 지정 · 운영<br>교육 등 자격요건 점수 10점 이상 |
| 법규준수도 | 아래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br>·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br>· 최근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br>·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br>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사실 | 없음 |

##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 협정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 구 분 | 인증 前 | 인증 後 |
|---|---|---|
| 한-EU<br>한-영국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 한-싱가포르<br>한-아세안<br>한-인도<br>한-중국<br>한-베트남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 신청)<br>- 첨부 서류* 제출<br>- 발급기간 3일(보정기간 미포함)<br>- 현지 확인(필요한 경우)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 신청)<br>- 첨부 서류* 제출 생략<br>- 발급 2시간(자동심사 경우)<br>- 현지 확인 생략 가능 |
| 기타 협정 | 원산지인증수출자 미적용 | |

*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원산지소명서/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등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

### 인증 취득 전 · 후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 절차

| 구 분 | 발급 절차 |
|---|---|
| 취득 前 | ① 발급신청 → ②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 원산지심사 → ③ 승인 → ④ 발급 |
| 취득 後 | ① 발급신청 → ② 승인 → ③ 발급 |

### 기관발급 VS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
| ■ 세관 · 상공회의소 등에서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등)<br>■ 원산지 증명서 공신력은 있으나 발급절차 복잡, 비용부담 증가 | ■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방식(EFTA, EU, 영국, 칠레, 미국, 터키 등)<br>■ 원산지 증명절차는 간단하나, 원산지증명서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허위 작성 우려가 있음 |

❖ 자율발급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절차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관할세관에 신청

###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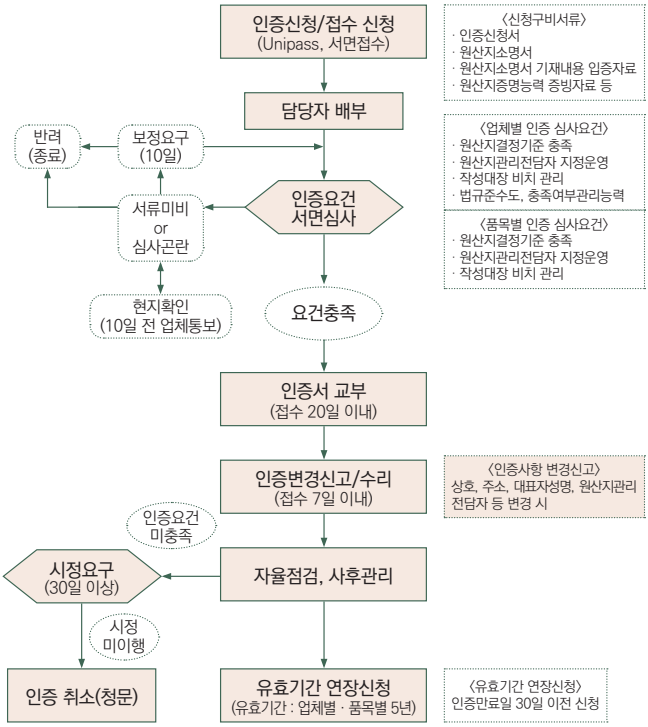


**인증수출자 신청 도움 받기**

| 구 분 | 서 비 스 | 이 용 방 법 | 내 용 |
|---|---|---|---|
| 1단계 | 메일링 서비스 | E-mail : fta010@korea<br>☎ 02.510.1387 | 인증수출자 취득에 필요한 구비서류, 교육이수 방법 등을 표준 안내문으로 송부 |
| 2단계 | 1:1 맞춤 안내<br>· 컨설팅(유선) | ☎ C/O 상담 : 02.510.1398<br>☎ 인증 상담 : 02.510.1387 | 표준안내문 열람 후 질문사항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 후 맞춤 1:1 안내를 받음 |
| 3단계 | FTA인증 · C/O 상담센터(방문) | 세관방문 | FTA인증FTA인증 · C/O 상담센터에 상담신청 |

[상담신청]
서울본부세관→알림 · 소식→FTA인증 · C/O상담센터→상담신청(http://www.customs.go.kr/seoul/main.do)

## 인증신청 서류 목록

| 업체별 인증신청 | 품목별 인증신청 |
|---|---|
|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 2. 원산지소명서 | 2. 원산지소명서 |
| 3.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OM) | 3.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OM) |
| 4. 제조공정도 | 4. 제조공정도 |
| 5. 원산지(포괄)확인서 | 5. 원산지(포괄)확인서 |
| 6.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6.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 7. 위탁가공(임가공)계약서 | 7. 위탁가공(임가공)계약서 |
| 8.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 | 8.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 |
| 9. 신청물품 및 원재료 단가 입증 자료 (수출신고필증, 운임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9. 신청물품 및 원재료 단가 입증 자료 (수출신고필증, 운임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 10.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10.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 1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1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 1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1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 13.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 13.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
| 13-1. 외부전담자(계약서, 자격증 등) | 13-1. 외부전담자(계약서, 자격증 등) |
| 13-2. 내부전담자(교육증빙자료, 자격증 등, 20점 이상) | 13-2. 내부전담자(교육증빙자료, 자격증 등, 10점 이상) |
| 14. 신청물품 HS 세번 근거자료 (품목분류사전회시공문, 관세사 등의 품목분류의견서 등) | 14. 신청물품 HS 세번 근거자료 (품목분류사전회시공문, 관세사 등의 품목분류의견서 등) |
| 15. 원산지관리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또는 원산지관리 매뉴얼 | |
| 16. 최근 1년간 수출통계 | |

※ ① 5는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또는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
② 8,9는 신청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등
③ 14는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인증서(업체별, 품목별) 발급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CERTIFICATE OF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 상 호 :
(Name of Company)

○ 주 소 :
(Address)

○ 대 표 자 :
(Representative)

○ 인 증 번 호 (Customs Authorisation No.) :

○ 인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 2021년07월14일 ~ 2026년07월13일

위 업체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pproved Exporter by Korea Customs Service
Korea FTA
AEX
Authorization Number
010-

2021년07월14일
(2021 / 07 / 14)

서울세관장
Head of SEOUL Customs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CERTIFICATE OF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 상 호 :
(Name of Company)
○ 주 소 :
(Address)

○ 대 표 자 :
(Representative)
○ 인 증 번 호 (Customs Authorisation No.) :

**원산지인증 물품내역(List of Certified Products)**

| 품목번호(4단위)<br>[HS No.(4-digit)] | 자유무역협정 명<br>(Name of FTA) | 인증유효기간<br>(Validity Period) |
|---|---|---|
| | 한-베트남 | 21-07-22~26-07-21 |

위 업체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2021년07월22일
(2021 / 07 / 22)

서울세관장
Head of SEOUL Customs

【 인증수출자 로고 】

| |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되어 발행되며, 로고에 인증번호가 포함됨 |
|---|---|
| ● '인증수출자'를 협정(EU 등)에서 표기하고 있는 'Approved EXporter' 머리글자 사용, 또한 사용자 이해 편의를 위해 'Korea', 'FTA' 문구 삽입 | |

## FTA 더 알아보기

### 인증수출자 유의사항

**원산지 판정책임**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 증빙 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서류보관 및 검증책임**

- 업체는 원산지 판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업체에 대해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님

### 원산지 확인서류

| 종 류 | 내 용 |
|---|---|
| 원산지소명서 | 생산자(또는 수출자)가 FTA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 |
|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OM) | 생산 공정에 투입된 각 원재료들에 대한 품명, HS Code, 원산지 등을 기술한 서류(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 자료) |
| 제조공정도 | 완제품이 역내에서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 수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 |
| 원산지(포괄) 확인서 | 제품 혹은 재료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
| 국내제조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국내 제조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 완제품 및 원재료 단가 입증자료 | 수출신고필증, 운임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부가가치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

❖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확인해 주는 서류(일종의 국내 원산지증명서)

(국내제조확인서) 발급업체에서 제조 · 가공한 사실을 확인해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어떤 제조 · 가공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공정과 부가가치 누적을 위해 사용)

## 관련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 수출자·생산자 | | | | |
|---|---|---|---|---|
| 1.수출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 | 전화/팩스번호 | |
| | 주 소<br>(전자우편주소) | | | |
| 2.생산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 | 전화/팩스번호 | |
| | 주 소<br>(전자우편주소) | | | |

| 물 품 명 세 | | | | |
|---|---|---|---|---|
| 3.품명/규격 | | | 4.품목번호(HS No.) | |
| 5.물품가격 | 가격조건 | 공 장 도가격(EXW) [ ]<br>본선인도가격(FOB) [ ] | 6.원산지결정기준 | |
| | 금 액 | | 7.자유무역협정명칭 | |
| 8.주요생산 공 정 | | | | |

| 원재료명세서 | | | | | | |
|---|---|---|---|---|---|---|
| 9.연번 | 10.재료명 | 11.품목번호 (HS No.) | 12.원산지 | 13.가 격 | | 14.공급자 (생산자) |
| | | | | 수 량 | 가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합 계 | | 원산지재료(국산) | | | | |
| | | 비원산지재료(수입산) | | | | |
| | | 합 계 | | | | |

|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 | | |
|---|---|---|---|
| 16.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17.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 18.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부가가치비율 : % ) | |
| 19.결합기준 | 예 [ ] 아니오 [ ] | 20.특정공정기준 | 예 [ ] 아니오 [ ] |
| 21.역외가공기준 | 예 [ ] 아니오 [ ] | 22.최소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 23.누적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24.직접운송 여부 | 예 [ ] 아니오 [ ] |
| 25.기 타 | 예 [ ] 아니오 [ ] | 26.원산지 결정 | 충족 [ ] 불충족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1.수 출 자 | ㅇ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
| 2.생 산 자 | ㅇ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3.품명/규격 | ㅇ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br>예) TV : ○am○○ng ○○-1234 ; ○○ TV<br>ㅇ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 4.품목번호(HS No.) | ㅇ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
| 5.물품가격 | ㅇ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br>ㅇ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 6.원산지결정기준 | 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 원산지결정기준 | 기재방법 |
|---|---|
| 가. 완전생산 물품 | - WO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CC |
|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CTH |
|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CTSH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 BD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 BU |
|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 MC |
|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 NC |
| 라. 결합기준<br>-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br>- CC(CTH또는CTSH) + SP<br>- BD(BU, MC 또는 NC) + SP<br>-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
| 마. 특정공정기준 | - SP |
|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 OP |
| 사. 기타기준 | - Other |

ㅇ 결합기준 기재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
-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 될 경우
: BU 30% + SP

| | |
|---|---|
| 7.자유무역협정명칭 | ㅇ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br>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 |
| 8.주요생산공정 | ㅇ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br>예)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br>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br>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br>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
| 9.연 번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br>-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
| 10.재 료 명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 11.품목번호(HS No.) | ㅇ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
| 12.원 산 지 | ㅇ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 13.가 격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14.공급자(생산자) | ㅇ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 15.합 계 | ㅇ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16.~25.원산지기준 | ㅇ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br>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 [√]"로 기재합니다.<br>ㅇ 19 ~ 23 란에 "예 [√]"로 기재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6.원산지결정 | ㅇ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기재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발급번호(Reference No.) :

| | | |
|---|---|---|
| 2.공급하는 자 (Supplier)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 | |
|---|---|---|
| 3.공급받는 자 (Supplied to)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 4.연번 (S/N) | 5.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 6.품목번호 (HS No.) | 7.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 8.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 9.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 10.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 | 11.원산지 (Country of Origin) | 12.원산지포괄 확인기간 (년월일~년월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
|---|---|---|---|---|---|---|---|---|---|
| | | | | | | 충족 (Y) | 미충족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1.발급번호 |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 2.공급하는 자 |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br>○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3.공급받는 자 |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 4.연번 |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
| 5.자유무역협정명칭 |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br>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
| 6.품목번호(HS No.) | ○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
| 7.품명・규격 |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
| 8.수량 및 단위 | ○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
| 9.원산지결정기준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 원산지결정기준 | 기재방법 |
|---|---|
| 가. 완전생산 물품 | - WO |
| 나. 세번변경기준<br>- 2단위 세번변경기준<br>- 4단위 세번변경기준<br>- 6단위 세번변경기준 | <br>- CC<br>- CTH<br>- CTSH |
| 다. 부가가치기준<br>-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br>-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br>-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br>-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r>- BD<br>- BU<br>- MC<br>- NC |
| 라. 결합기준<br>-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br>- CC(CTH또는CTSH) + SP<br>- BD(BU, MC 또는 NC) + SP<br>-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
| 마. 특정공정기준 | - SP |
|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 OP |
| 사. 기타기준 | - Other |

| | |
|---|---|
| 10.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br>예)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 |
| 11.원산지 |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 |
| 12.원산지포괄확인기간 |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br>예) 2016.07.01 - 2018.06.30<br>※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 제1쪽)

1.발급번호(Reference No.) :

| | | |
|---|---|---|
| 2.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Blanket period) | 년 월 일 부터 (From YYYY/ MM/ DD to | 년 월 일까지 YYYY/ MM/ DD) |
| 3.공급하는 자 (Supplier)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
| 4.공급받는 자 (Supplied to)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

5.공급물품 명세(Good(s) Statements)

| 연번 (S/N) | 품목번호 (HS No.) |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 가격 (Value) | 주요 생산공정 (Production Process) |
|---|---|---|---|---|---|
| | | | | | |
| | | | | | |

6.재료 명세(Material Statements)

| 공급물품 연번 (S/N in Entry 5) | 재료연번 (S/N) | 품목번호 (HS No.) |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Originating Material(Y/N)) |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 가격 (Value) | 비고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inward processing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1.발급번호 | ㅇ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 2.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 ㅇ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br>※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
| 3.공급하는 자 | ㅇ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 4.공급받는 자 | ㅇ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 5.공급물품명세 | ㅇ 공급물품의 연번, 품목번호(HS No.)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및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
| 6.재료명세 | ㅇ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목번호(HS No.)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기재합니다.<br>ㅇ 단, 공급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필요시 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하거나 비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br>ㅇ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재료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재료 해당여부'란에 'Y', 아니면 'N'으로 기재합니다. |

# 06 원산지증명서 발급(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방식 이해하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원산지 증명서(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원산지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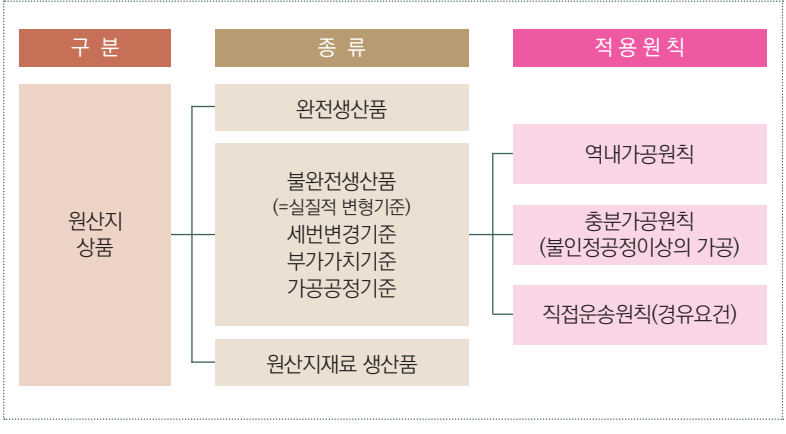


### 원산지증명 발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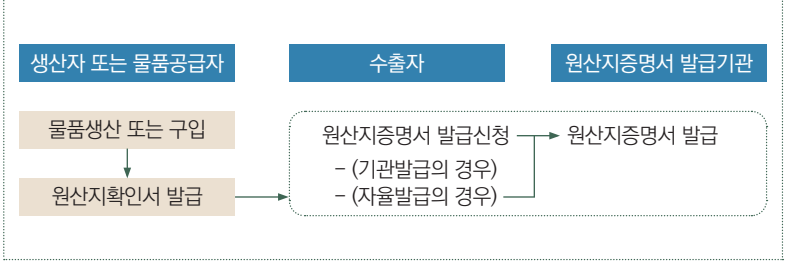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는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세관 · 상공회의소 등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형태

| 구 분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한-EU |
|---|---|---|---|
| 발급방식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 발급주체 | 베트남(산업무역부)<br>한국(세관, 상의) | 베트남(산업무역부)<br>한국(세관, 상의) | 수출자(6천유로 이하)<br>인증수출자(6천유로 초과) |
| 서 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상업서류(송품장 등)에<br>원산지신고서 문안기재 |
| 유효기간 | 1년 | 1년 | 1년 |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기관)

- 세관발급(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FTA → 원산지증명 신청)

관세청 홈페이지 → 세관통관 포털 사용인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원산지 증명서 작성 → 세관승인 → 발급 (출력)

- 대한상공회의소(cert.korcham.net)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회원가입, 서명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원산지 증명서 작성 → 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 (출력)

## FTA 사후신청 기간

베트남은 한-베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한-아세안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의 사후적용 기간을 두고 있어, 수출물품 세율이 동일할 경우 사후적용 기간을 고려하여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 국 가 | | FTA 사후신청기간 |
|---|---|---|
| 대한민국 |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 베트남 | 한-아세안 |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 | 한-베트남 |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Reference No.<br>**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r>(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br>FORM AK<br>Issued in _____<br>(country)<br>See Notes Overleaf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br><br>Departure date:<br>Vessel's name/Aircraft etc.:<br>Port of Discharge | 4. For Official Use<br>☐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br>_____<br>☐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br>_____<br>.....<br>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5. Item number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br><br>.....<br>(Country)<br><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br><br>.....<br>(Importing Country)<br><br>.....<br>Place and date,<br>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12. Certification<br>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br><br>.....<b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CTH 또는 RVC 40% |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br>(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br>(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br>(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br>(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br>(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br>(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br>CTC<br>WO-AK<br>RVC %<br>(예: RVC 45%)<br>CTH + RVC %<br>Specific Process |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Rule 6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Reference No.<br><br>**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r>(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br>FORM KV<br><br>Issued in _____ (country)<br><br>See Notes Overleaf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br><br>Departure date<br><br>Vessel's name/Aircraft etc.<br><br>Port of Discharge | 4. For Official Use<br><br>☐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br>_____<br><br>☐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br>_____<br><br>.....<br>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5. Item number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 | | | | |

| |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br><br>.....<br>(Country)<br><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br><br>.....<br>(Importing Country)<br><br>.....<br>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12. Certification<br>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br><br>.....<b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13. Remarks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베트남과의 협정 제3.8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제11란에 기재된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 | 제8란 기입사항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br>(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br>(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br>(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br>(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 <br>"CTC"<br>"RVC %"(예: RVC 45%)<br>"CTH+RVC 40%" 등<br>"Specific Processes" |
|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 "PE" |
|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Article 3.5"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요청

**Q** 베트남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요청 시 확인방법은?

**A**

원산지증명서 QR 코드 이용 또는
관세청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www.customs.go.kr/co.html) 확인토록 안내

(방법1) 원산지증명서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해당 페이지 이동 후 확인 → QR코드 스캔 시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Reference No. 및 Reference Code. 자동 입력

(방법2) 관세청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 이동 → Reference No. 및 Reference Code. 입력 후 확인

Korea Customs Service

Authentic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Reference No.

Please enter reference No only

Reference Code.

Please enter reference Code only

Check it out

## FTA 더 알아보기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수출기업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 간이발급제도 개요

- (의의) 원산지소명 간소화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편 및 FTA 활용 용이
- (협정) 한-베트남, 한-아세안, 한-중 FTA 및 한-인도 CEPA 등 4개 FTA

  ※ 품목별로 적용협정 상이

- (대상) FTA 고시*에서 지정한 243개 품목(별표 2의 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방법)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출로 원산지 소명에 필요한 증빙서류 대체(원산지 확인서 등 최대 약 12종)

#### 관련 규정(FTA고시)

제26(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규칙 제13조의 서류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2-2(이하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이라 한다.)와 같다.

#### 간이발급 대상(식품기업 관련)

국수, 당면, 냉면, 라면,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기타 베이커리 제품(빵 등), 김치, 조제 김 등 8개 품목

## 별표2-2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

※ 다음의 국내 가공 공정은 간이발급대상물품에서 제외

- 국내 제조 · 가공 공정이 반제품 및 블랭크를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수출품)의 품목분류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간이발급대상물품 확인 목적만으로 사용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 품목분류 확인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HS | HSK 품명 | 품명설명 | 활용대상 협정 | 국내 필수수행 공정 | 비고 |
|---|---|---|---|---|---|---|
| 1 | 1902.19 -1000 | 국수 | 밀이나 옥수수, 쌀, 감자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발효하지 않은 국수<br>-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 밀가루, 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 |
| 2 | 1902.19 -2000 | 당면 | 감자나 고구마전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면<br>-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 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 증숙 공정을 거쳐 생산 | |
| 3 | 1902.19 -3000 | 냉면 | 전분(감자 · 고구마)가루에 메밀가루나 칡가루 등을 혼합하여 반죽한 면<br>-다만, 스프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 밀가루, 쌀가루, 메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 |
| 4 | 1902.30 -1010 | 라면 |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긴 즉석식품<br>〈제외대상〉<br>-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 밀가루(제1101호)와 전분 등으로 면을 만들고 유탕(제1511호 등) 처리한 후 제조된 분말스프(제2103호)와 함께 소매포장 | 면발(제1902호)을 공급받아 생산시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

| | HS | HSK 품명 | 품명설명 | 활용대상 협정 | 국내 필수수행 공정 | 비고 |
|---|---|---|---|---|---|---|
| 5 | 1905.90 -1040 |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 밀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과자<br>〈제외사항〉<br>- 제1905.31호 스위트비스킷*과 구분<br>*가루, 설탕, 지방, 감미료 등 함량이 전 중량의 50% 이상인 것(전중량 설탕10% 이상, 전중량 지방35% 이하, 완제품의 수분12% 이상)<br>- 단 굽지 않은 반죽 상태의 생지는 제1901호에 분류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공정을 통해 생산 |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을 공급받아 생산시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br><br>베이커리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가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제외 |
| 6 | 1905.90 -1090 |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제외) | 곡물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기타의 베이커리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또는 튀김(유탕) 공정을 통해 생산 |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을 공급받아 생산시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br><br>베이커리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가치는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제외 |
| 7 | 2005.99 -1000 | 김치 | | 한-중 FTA, 한-베트남 FTA | 배추, 무 등 각종 야채 등을 주·부재료로 절임, 각종 양념과 버무림 과정을 거쳐 생산 | |
| 8 | 2106.90 -4010 | 조제김 | 해초류인 김에 소금과 기름 등을 발라 구운 조미김 | 한-중 FTA, 한-베트남 FTA | 김(제1212.21호)에 식물성 유지(제1515호)와 소금 등을 첨가하여 굽기 | |
| -이하생략- | | | | | | |
| 243 | 9001.90 -1000 | 프리즘 | 빛의 분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한 광학장치<br>〈제외대상〉<br>-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유리거울(제7007호)<br>- 도로·교통 표지판용 유리(제7014호)<br>- 안경용·시계용 유리(제7015호)<br>- 램프나 조명기구용 반사경 등(제9405호)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 유리나 석영을 설계된 굴절률과 반사각등에 맞춰 재단, 연삭, 면취 가공하거나, 플라스틱 등에 광학성 물질 등을 도포하거나 접착하여 생산 | |

※ 조제김 세번변경 반영 예정(2008.99호)

## FTA 더 알아보기

### 원산지 간편 인증제도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 · 축 · 수산물, 전통식품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 시 원산지 증빙을 인정하는 제도**

#### 목적

-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

#### 근거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품목 및 서류

간편 인정 서류 및 발급기관

| 구분 | 품 목 | 서류 및 발급기관 |
|---|---|---|
| 농산물 | 농산물 1028개 품목<br>( 쌀, 인삼, 홍삼, 백삼 등) | (인정서류)<br>-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br>-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GAP)<br>-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br>- 지리적표시 등록증<br>-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br>(발급기관)<b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br>(법령에 의해 위임 · 위탁 받은 자 포함)<br>-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 구분 | 품 목 | 서류 및 발급기관 |
|---|---|---|
| 수산물 | 수산물 81개 품목<br>(물김, 마른 김 등) | (인정서류)<br>- 물김 수매확인서<br>- 마른 김 수매확인서<br>- 수산물 품질인증서<br>-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br>-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br>-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br>(발급기관)<b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br>(법령에 의해 위임 · 위탁받은 자 포함)<br>-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
| 축산물 | 축산물 5개 품목<br>(소, 돼지, 계란, 닭, 오리) | (인정서류)<br>-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br>※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br>(발급기관)<br>- 축산물품질평가원<br>(법령에 의해 위임 · 위탁받은 자 포함) |
| 전통식품 | 전통식품 32개 품목<br>(고춧가루, 김치류 등) | (인정서류)<br>- 전통식품 품질인증서<br>(발급기관)<br>- 한국식품연구원 |
| 지역<br>특산품 | 지역특산품 47개 품목<br>(감귤, 한라봉 등) | (인정서류)<br>-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br>(발급기관)<br>- 제주특별자치도청 |

● (장점) 생산자 등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고시한 농산물 등 1,193개 품목에 대해 발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어 FTA를 활용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생산자(농어민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 부담 완화
- FTA 활용을 통한 우리 농수산물 등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역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07 서울세관 중소기업 주요 지원사업(FTA활용 등)

수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기업지원센터 블로그

###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운영

- 세관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TA활용, 수출통관 등 수출종합컨설팅 지원
- 운영방법 : 2~3인 1조 방문 원칙, 필요시 공익관세사 동행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2

###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 FTA 원산지증명서 특혜 보류 등 해외통관애로의 적시 해소 지원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통관, 관세 납부유예 등 연계 지원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1389

### '공익관세사 무료 컨설팅'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통관 · FTA · 환급 등 관세행정 종합컨설팅 제공
- 운영방법 : 유선, 방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센터 현장 컨설팅(매주 화·목)

[문의] 공익관세사 ☎ (02)510-1399

### 'FTA 전문인력 교육'(http://www.yesftaedu.or.kr)

- 중소기업 실무자,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관리인력 양성
- 운영방법 : 교육기간은 매년 4월~11월까지이고 전액 무료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참조

[문의] YES FTA 교육지원센터 ☎ 1544-5702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지원
- 1년에 두 차례 실시(상반기, 하반기)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참조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5, 1380

## 수출화주 직접신고 프로그램

관세청 유튜브

### 개요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화주는 직접 수출신고할 수 있음

### 사전준비

| | |
|---|---|
| 통관고유부호 받기 | ㅇ 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수출자 구분코드) 신청하기<br>– 유니패스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 ↓ | |
| 유니패스 회원 가입 | ㅇ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기<br>– 웹사이트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 |
| ↓ | |
| 신고인 부호 받기 | ㅇ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아야 수출화주가 직접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할 수 있음(일련번호 5자리 생성)<br>※ 신고인부호 문의: 서울세관 통관검사2과 ☎ (02)510-1146 |

### 수출신고 절차

| | |
|---|---|
| 유니패스 로그인 | https://unipass.customs.go.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 ↓ | |
| 신고서 작성 | ㅇ 신고서작성 경로: Home→전자신고→신고서작성→수출통관→수출신고서<br>ㅇ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공통사항1,2 및 란사항 입력<br>(참고 : Home→고객센터→UNI-PASS매뉴얼→신고서작성 목록 (수출통관) 매뉴얼)<br>* 전자상거래수출 간이신고 방법: 공통사항(1)→기본신고사항→신고구분 항목 'E'로 설정 시 항목 간소화 (57개항목→27개항목) |
| ↓ | |
| 신고서 전송 | ㅇ 신고서작성 완료→미리보기를 통해 작성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일괄저장 (임시문서함 저장)→신고서 전송 후 오류가 통보되면 수정한 후 재전송하거나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1544-1285)<br>※ 신고서와 첨부서류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관세법) |
| ↓ | |
| 첨부서류 사후제출 | ㅇ 전송된 수출신고서는 자동수리, 심사, 검사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br>ㅇ 신고서 전송 후 서류제출* 방법: Home→전자신고→첨부서류 사후제출<br>* 서류심사에 선별되었을 경우, 전자서류 제출 |
| ↓ | |
| 세관심사 | ㅇ 수출신고서는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전송<br>(신고수리 전까지는 물품소재지에서 반출 불가)<br>ㅇ 관할세관 수출부서에서 접수하여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진행 |

### 사후절자

– 수출이행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의무(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수출정정 · 취하

· 잘못 기재된 수출신고서의 내용을 정정(기간 연장 포함)하거나 주문취소 등으로 취하

· 신청 경로: Home→전자신고→신고서작성→수출통관→수출신고수리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정정신청 후 서류심사 선별된 경우, 정정·취하 증빙 전자서류 제출

[문의] 서울세관 통관검사2과 ☎ (02)510-1144, 1147

## ▶ 전자상거래업체 수출지원 프로그램

관세청 유튜브

### 배경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 제도(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융 지원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 요건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사이버몰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로 신고한 업체
- 전자상거래 대상 물품*으로 수출물품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 야생동물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대상), 계약상이 수출, 재수출조건부 수입통관 후 수출 등은 전자상거래수출 간이신고 대상 제외(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35조의2)

### 혜택 및 효과

- 수출신고 항목의 대폭 축소(57개 기재 항목 → 27개 항목만 기재)
- 관세 환급
  - · 국내제조물품이 아닌 수입원상태 수출 시 거래구분코드를 72로 입력해야 환급 가능
- 부가세 영세율
-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 일괄 등록 가능(50~100건의 엑셀파일 자료를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한 번에 등록)

[전자상거래 수출 문의] 서울세관 통관검사2과 ☎ (02)510-1144

## 중소 수출기업 수입세금 환급 프로그램

관세청 유튜브 관세청 홈페이지

### 사업목적

중소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일정금액 등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기업 지원

### 주요내용

-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 확인만으로 환급하는 방법

- 개별환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소요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확인하여 환급하는 방법

- 환급신청기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 제출서류

- 환급금 계좌등록 시 제출서류

  환급금 계좌통보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계좌통장사본

-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간이 정액 환급)

  환급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 제조사실 입증서류

  [문의]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 (02)510-1360/1362~1365

## 외국환거래법 상담 프로그램

관세청 유튜브

### 사업목적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법 통합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미한 외환절차위반을 방지하고자 외환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법 상담 및 단순 절차 위반 등 자진신고 창구 운영
  - · 신생 수출기업·중소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위반 유형 안내

〈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 주요 위반 유형 예시 〉

| 위반유형 | 위반사례 |
|---|---|
| 채권 · 채무상계 |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A사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처분하면서 해당 주식을 비거주자인 채권자 37개사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나,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 |
|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 수령 | 국내 A사는 홍콩 현지법인에 10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적 전 100만 달러를 수령하고, 6개월 후 수출 이행 |
| 제3자에 대한 지급 | 미국의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 |

### 관련문의

[ 외국환거래법 상담문의 ] 서울세관 외환 Help Desk ☎ (02)510-1810~1

[ 자진신고 창구 ]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 (02)510-1816~8

## 지원사업 더 알아보기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

### 1 YES FTA 전문교육 개요

FTA관세특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수행

| | |
|---|---|
| 교육목적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
| 교육기간 및 비용 | [기간] 2021년 4월~11월<br>[비용] 전액 무료(관세청 위탁사업으로 운영) |
| 교육장소 | [집합과정] 전국 주요 권역별(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운영<br>[온라인과정]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운영<br>(www.yesftaedu.or.kr)<br>[수요자 맞춤형과정] 교육수요자 요청장소에서 운영 |
| 교육특성 | ● 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br>(FTA 첫걸음(개론)부터 각론 및 심화과정까지의 복합적 교육과정)<br>●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협업 적용성 확보<br>(중소기업 실무자 대상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br>● 수요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권역별 교육 및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br>(주요 권역별 교육 개설 및 방문교육 실시)<br>● 시 · 공간의 제약이 없고, 반복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운영<br>(수강 편의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24시간 서비스제공)<br>●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상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 인정(교육 수료 시 관세청 발급 수료증 제공) |

## 2 교육프로그램

중소기업 실무자, 중소기업 임직원,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13개) 실시

| 과 정 | 세부 과정명 | | 주요 내용 |
|---|---|---|---|
| 집합 | FTA첫걸음(기본) | | FTA 개요, FTA협정 및 법령, 관세환급 등 |
| | FTA활용(심화) | | 원산지증명제도, 전자상거래 수출 등 |
| | FTA-PASS | | FTA-PASS 개요 및 사용법 실습 |
| | 품목분류 | | HS개요, 통칙 해설 및 사례 등 |
| | 인증수출자 | | 인증수출자제도, 인증 신청서류 작성 및 사후관리 |
| | 원산지결정기준 | | 원산지규정,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및 특례기준 등 |
| | 원산지검증 | | 원산지검증 절차, 사례 및 대응방법 |
| 온라인 |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 |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
| | C/O작성하기 |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 |
| | HS 통칙 이해하기 | | HS통칙 이해 및 사례 |
| | FTA-PASS 사용하기 | | FTA-PASS 사용방법 |
| 수요자맞춤형 | 1:1 수출컨설팅 | ① FTA활용 기본 | FTA개요, 품목분류기초,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등 |
| | | ② FTA활용 실습 | 품목분류실무, 원산지판정절차 등 |
| | | ③ 사후검증 집중 |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및 위반사례 검토 |
| | | ④ 인증수출자 집중 |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취득 방법 등 |
| | | ⑤ FTA시스템 집중 | FTA-PASS 개요, 사용 방법 등 |
| | | ⑥ 수출역량강화 집중 | 수출입통관절차, 관세환급, 무역실무 등 |
| | 공급망관리 | | FTA 활용개요, 품목분류 기초 등 |

**교육문의 및 신청(YES FTA 교육지원센터)**

- 전화 : 1544-5702 - 이메일 : yesftaedu@origin.or.kr
- 교육신청 : http://www.yesftaedu.or.kr(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신청)

※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교육프로그램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3 공급망 관리 교육

### 공급망 관리

■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FTA 협정 적용을 위해 원재료 납품 업체 등 협력업체의 FTA 역량도 중요!
→ 서울세관 중소기업 주요 지원사업 중 FTA 전문인력 교육인 「공급망 관리 과정」을 통해 협력업체의 FTA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

### 공급망 관리 교육

(중요성) 메가 FTA 시대 수출기업의 FTA 협정 적용 및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필수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함. 이에 섬유, 반도체, 기계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수출기업에서 주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를 위해 FTA 전문인력교육인 「공급망관리과정」 교육을 신청

(교육과정) 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실무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수출입 기업과 협력사의 FTA 역량 강화 및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 도모

【교육과정】

| 구 분 | 과 목 명 | 교 육 내 용 |
|---|---|---|
| 공급망 관리 기본 커리큘럼 | FTA 활용 개요 | FTA 기본개념 등 |
| | 품목분류기초 | 품목분류 중요성 등 |
| | 원산지결정기준 기본 이론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등 |
| | 원산지 판정절차 기초 | 원산지 판정절차 등 |
| |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기초 | 원산지확인서 작성절차 등 |
| |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기초 | 원산지 검증방식 등 |

❖ 이외에도 국내고객사 FTA 평가 대응, FTA 시스템 활용 강화, 단계별 원산지관리 등 다양한 공급망 관리 교육 프로그램 시행

## 4 교육지원 사례

### [사례 1] 수출 초보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W사는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업체였으나, 최근 유럽연합, 태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첫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사례 2] 원산지관리를 위한 협력사 교육까지 한번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P사는 3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샤시, 강판 등 원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아 자동차 부품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이에 P사는 협력사들과 함께 관세청 YES FTA 공급망관리 과정을 신청하여 자동차 부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법을 교육받고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사례 3] 최신 무역 현안에 대한 교육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A사는 아마존, 쇼피 등 온라인 판매 업체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과목이 포함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과정을 통해 수출신고부터 자유무역협정 적용까지 탄탄한 수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 교육 성과('20년)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50회 교육을 실시해 5,468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3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11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 또한 25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을 받았으며, 44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취득하는 성과를 달성

## 지원사업 더 알아보기

**중소 · 중견기업이 FTA체결 상대국의 사후검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실시**

###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요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및 FTA 활용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최대200만원까지 지원
  -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구 분 | 적용기준 | 기업 부담 | 비 고 |
|---|---|---|---|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억원 이하 | 전액 지원 | |
| 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 10% | Ⅰ기업군제외 |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 20% | Ⅰ, Ⅱ기업군 제외 |
| Ⅳ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지원금액의 30% | Ⅰ, Ⅱ, Ⅲ기업군 제외 |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

〈 다 음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9~'20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2. 신청 및 접수

-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

  * (메일제목)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_소재지

- '21년도 2차례 실시(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 예정)

  * ('1차 접수기간) '21.3.2. ~ 3.19, (2차 접수기간) '21.7.5. ~ 7.16.

-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 시 사업세관별 추가 접수기간 별도 운영 가능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1-1]
(ⅳ)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 FTA 포털에 공개된 관세사 Pool에서 희망하는 관세사 선택

  * 신청기업이 관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세사를 해당 기업에 배정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선정 심사

- 사업세관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내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기업 및 관세사에 선정·배정 여부 통보

  * 각 사업세관은 자체 심사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사업 참여 관세사*는 최대 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하며, 전년도 공익관세사로 활동한 실적이 우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최대 2개 기업 추가 가능

  * 「원산지관리 지원 관세사 양성교육」 이수자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

〈 심사기준(요약) 〉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9~'20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 기업이 아닐 것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없을 것

◈ 컨설팅 대상 여부 확인 : 기업이 증빙자료 제출 → 세관 확인

① 최근 3년간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일 것

* FTA 특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단순 임가공만 하는 기업 등은 제외

◈ 대상기업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대상기업 선정기준 |
|---|---|
| 1순위 | - 원산지 사후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는 기업<br>· 1그룹(인도네시아, 터키)<br>· 2그룹(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태국, 이탈리아)<br>· 3그룹(스페인, 영국,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스위스, 프랑스) |
| 2순위 | -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는 기업 |
| 3순위 | -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br>· 섬유, 의류(편물제품), 자동차부품(베어링 등), 기계류(공작기계 등) |
| 4순위 | -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 4.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착수) 관세사는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내에 사업세관에 착수 보고를 해야 하며, 이때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같이 제출함
  · 기한 내 착수 보고가 없는 경우 즉시 배정 취소
- (컨설팅 시행) 관세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사업세관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정상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
  · 관세사는 평일 근무시간 내 1일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 가능

## 5. 합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 (합동 컨설팅) 사업세관은 관세사와 합동으로 업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합동 컨설팅 실시
  · 최근 검증 이슈, 검증 대비 유의사항 등 안내
- (만족도 조사) 사업세관은 컨설팅의 충실성, 관세사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6. 컨설팅 평가 및 대금 지급

- (1차 평가) 사업세관은 컨설팅 완료보고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평가

  * 사업 성과(80점), 고객 만족도(20점)에 따라 차등 평가

- (최종 평가) 사업세관의 '컨설팅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 (대금 지급) 최종 평가금액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부담비용을 제외한 대금이 해당 관세사에게 지급

〔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 〕

| 매출액 | 50억원 이하 | 500억원 이하 | 1,000억원 이하 | 1,500억원 이하 |
|---|---|---|---|---|
| 부담률 | 0% | 10% | 20% | 30% |

-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 중도 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대상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관세사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가능

## 7. 기타사항

- (제재 조치)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컨설팅 사업 참여 제한 및 대금 감액 조정

## 8. 신청세관 및 문의처

- (사업시행) 인천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평택세관

| 사업세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인천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2 | ftaic@korea.kr |
| 서울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5 | seoulfta@korea.kr |
| 부산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79 | busanfta@korea.kr |
| 대구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4 | daeguyesfta@korea.kr |
| 광주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 gwangjufta@korea.kr |
| 평택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44 | fta016@korea.kr |

[붙임 1]

# 2021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 | | | |
|---|---|---|---|
| ①기업명 | | ②대표자명 |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업종·업태 | |
| ⑤사업장 주소 | | | |
| 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 공고 확인) | □ 해당 □ 해당 없음 | ⑦전년도 매출액 | 원 |
| | | ⑧상시 근로자수 (전년도 매출액 없는 경우) | 명 |
| ⑨컨설팅 비용부담 | 최대 200만원 중 자부담 □ 0% □ 10% □ 20% □ 30%<br>* 참고 : 매출액 기준(전년도) : 50억원 이하(0%), 500억원 이하(10%), 1,000억원 이하(20%), 1,500억원 이하(30%) | | |
| ⑩FTA 활용 여부 | □ 활용(수출국 : ) | □ 미활용(수출국 : ) | |
| ⑪정부·지자체 등의 FTA 컨설팅* 수혜 여부 | (최근 2년 : 2019~2020년) □ 수혜 받았음 □ 아직 받지 못했음<br>*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 FTA 컨설팅 사업 | | |
| ⑫주요 수출품목 (HS 6단위) | 1. (HS ) | 2. (HS ) | 3. (HS ) |
| ⑬FTA 체결국 수출실적(US$) | 2018년(1~12월) | | |
| | 2019년(1~12월) | | |
| | 2020년(1~12월) |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 |
| ⑭매출 형태 |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 국내공급(내수용) | | |
| ⑮인증수출자 여부 | □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 |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 | □ 없음 |

| | | | | |
|---|---|---|---|---|
| ⑯담당자 | 성 명 | | 부서/직위 | |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 FAX | | E-mail | |

**2. 지정 희망 관세사**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관세사 기재
(※ '21년도 원산지관리 지원 관세사 명단은 관세청 FTA 포털 및 해당 사업세관 홈페이지에 공지)

| | | | | |
|---|---|---|---|---|
| ⑰지정 희망 관세사 | 소 속 | 예)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 | |
| | 주 소 | | | |
| | 성 명 | | 자격증번호 | |
| | 전화번호 | | E-mail | |
| | 휴대전화 | | FAX | |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관세청장 귀하**

직인명판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3. 정보 활용 동의서 4.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붙임 1-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지원사업 더 알아보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FTA원산지관리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지원사업」을 실시**

### 1 FTA-PASS 개요

관세청은 중소 · 중견 기업의 효율적인 FTA원산지관리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인 FTA-PASS를 개발하여 보급

- (도입) '10년 9월~, 인력 · 비용 부담으로 FTA활용에 애로가 많은 기업 지원
- (운영)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FTA-PASS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tapass.or.kr
- (목적) 원산지 판정 및 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 (현황) 가입기업 25,671개사, 원산지판정 1억 6천만 건, 서류발급 35만 8천 건('10년~'21년 3월)

### 2 주요 기능 및 특성

**FTA-PASS 원산지관리**

**협정별 원산지 판정 · 관리**
- 발효된 모든 FTA협정 및 품목 판정지원
- 공급물품 선택에 따른 일괄판정

**사용 용이**
- 원산지관리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 신규협정 발효 또는 협정문 개정시 빠른 분석 작업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응

**신뢰성**
- 기업ERP와 FTA-PASS 자료연계를 위한 범용 ERP 연계모듈 보급

**문서유통 및 보관**
- 원산지확인서 유통
  · FTA-PASS ↔ 기업ERP
- 사후검증을 대비한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 3 활용 유형

기업 규모, 구매 및 판매활동 등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FTA-PASS 유형을 선택하여 활용

| 구 분 | 기 본 형 | 간 편 형 |
|---|---|---|
| 대 상 | ■ 원산지 판정·발급·보관 등 원산지관리 전반 | ■ FTA 활용 초보 및 영세중소기업 |
| 절 차 | ■ 자료입력 → 판정 → 발급 | ■ 자료입력 → 판정 → 발급 |
| 장 점 | ■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용이<br>■ 완제품·원재료가 다양한 업체 편리 | ■ 최소정보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용이<br>■ 초보자도 단계에 따라 사용 가능 |
|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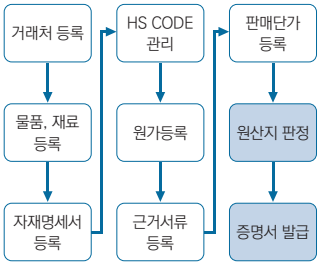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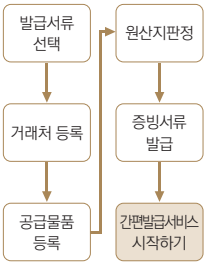 |

### 활용 유형 상세 내용

| 구 분 | 활용 대상 | 내 용 |
|---|---|---|
| 기본형 | 수출<br>(재고관리기능사용) | ■ 재고관리기법(월총평균, 이동평균, 선입선출)을 이용하여 재료비 산출<br>-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불부 등(엑셀 13종)<br>-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 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
| | 수출/국내공급<br>(재고관리기능 미사용) | ■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비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br>-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엑셀 9종)<br>-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 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
| 간편형 | 국내공급<br>(영세기업) | ■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산지관리<br>-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엑셀 2종)<br>-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 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

## 4 유용한 기능

### UNI-PASS 수출신고 정보 연계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PASS내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할 수 있도록 FTA-PASS(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와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줄어 듦

[FTA-PASS에서 UNI-PASS 연계 원산지증명신청 방식]

###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 제공

한-베트남 FTA · 한-아세안 FTA, 한-중 FTA · 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음

❖ FTA-PASS → 부가서비스 → 1국가 多협정특혜관세(베트남, 중국)

## FTA-PASS 사이트(http://www.ftapas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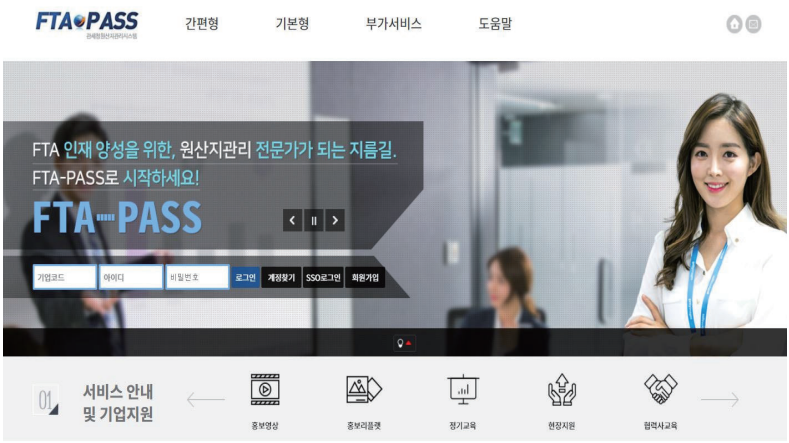


## 체험형 서비스 제공(회원가입 전 서비스 이용)

## 지원사업 더 알아보기

**베트남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 1 공익관세사 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 FTA 지원부서에 공익관세사를 배치 · 운영

- (도입) '15년
- (현황) '21년 현재 58명 공익관세사 위촉
- (지원)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 관련 사안
- (활동) '20년까지 총 2,800개의 기업에게 FTA 활용 등 무료 상담 제공

### 2 베트남 공익관세사 제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2위 국가인 베트남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소 ·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

- (도입) '20년 7월
- (현황) 관세사 4명(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 지원) 위촉
- (지원) 통관일반, 한-베트남/한-아세안 FTA 활용, 품목분류, 원산지관련 업무 등
- (문의)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 세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4 | incheonsupport@korea.kr |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9 | seoulsupport@korea.kr |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6 | busansupport@korea.kr |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5 | daegusupport@korea.kr |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7 | gwangjufta@korea.kr |
| 평택직할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34 | ptfta@korea.kr |

##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 상담 요청 서식

#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 상담 요청서

| | | | |
|---|---|---|---|
| 신청업체명 | | 업종 | |
| 주소 | | | |
| 주요 생산품목 | | 수출(희망)품목 | |
| 신청인 | | 직책/직위 | |
| 연락처/e-mail | | | |
| 문의 내용 | □ 통관 일반 | □ FTA 활용 | □ 품목분류 |
| | □ 수출시장 개척 | □ 원산지 확인 | □ 기타(  ) |
| 접수 세관 | | 접수 부서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접수 번호 | | 접수일 | .  .  . |
| 상담 요청내용 | | | |

# IV 해외통관애로 해소

## 해외통관애로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면서 외국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말합니다.

❖ 해외통관애로 유형

| 유 형 | 내 용 |
|---|---|
| 통관절차(지연) 관련 | 이유 없는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
| 품목분류 관련 |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수입규제 또는 과세 |
| 관세평가 관련 | 부당한 조사심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처분 등 |
| FTA 관련 |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거부 |
| 해외 관세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된 문제 | 면세점 등 보세구역 특허 신청의 부당한 거부 등 |
|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 | 금품요구, 특정한 포워더, 관세사 등 이용 요구 등 |

##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및 동향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청 블로그,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또는 주요국 해외관세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 관세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k_customs)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inebsc)

FTA 더 알아보기

## 해외통관애로해소 사례(베트남)

### 1 품목분류 상이로 협정적용 거부

① (애로사항) ○○식품은 우리나라 세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고 특혜 신청을 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분류 번호와 베트남의 품목분류번호가 상이하다며 특혜 적용을 거부당함

② (조치결과)

-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 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식품은 해당 지침에 따라 협정 상대국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하였고, 정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베트남 세관 측에 제출
- 베트남 세관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FTA 특혜 적용

③ (참고사항)

- 상기 업무지침에 따르면 HS번호 상이시 협정 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를 제출하면 협정 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함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필요함. 단,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 상대국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협정 상대국 관세 · 품목 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등

## 2 서명권자 미등록으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① (애로사항) ○○업체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정당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베트남 세관에서 해당 서명권자가 서명권자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 거부

② (조치결과)

- 정당한 서명권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베트남 세관에 통보함으로써 FTA 특혜 적용 및 통관 완료

③ (참고사항)

-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목록이 상대국에 전달되었음에도 상대국 내부 전달 과정에서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도움 요청 필요

주요 FTA 협정별 인장 및 서명 통보 의무

| 구분 | 해당조문 | 통보범위 | 통보방법 |
|---|---|---|---|
| 한-아세안 | 부록1 제2조 (발급기관) | 발급기관 명칭, 주소, 견본 서명, 견본 관인 | 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 |
| 한-베트남 | 협정 제3.15조 (발급당국) | 발급당국 이름과 인장 | 통보일로부터 15일 후 또는 그러한 통보에 명시된 더 늦은 날 발효 |
| 한-중국 | 협정 제3.16조 (권한 있는 기관) |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과 관련 연락처, 권한 있는 기관이 사용하는 관련 양식 및 문서에 대한 모든 인장 견본의 세부사항 | 통보일로부터 7근무일 후 또는 그러한 통보에 적시된 더 늦은 날 발효 |

### 3 소급발급 문구 미비로 인한 특혜 불인정

① (애로사항) ○○○업체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선적후에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베트남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소급발급 문구가 없다는 사유로 특혜 적용을 거부함
(※ 선적일자: '20.8.15(토), 임시공휴일: '20.8.17(월), 발급일자: '20.8.20(목))

② (조치결과)
-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선적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 경과한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인쇄되어야 함 (단, '20.8.17일은 우리나라 임시공휴일이므로 근무일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공휴일 제외)내에 유효하게 발급되었음을 설명하는 영문 서한문을 베트남 세관으로 발송 (※ 근무일/공휴일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기준임)
- 베트남 세관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FTA 특혜적용

③ (참고사항)
- 소급발급 문구 인쇄 기준은 개별 협정마다 다르며, 현재 관세청에서는 유사한 통관애로 발생 예방을 위해 매년 초 아세안 사무국, 인도 관세청 등으로 "우리나라 공휴일 안내 서한문"을 사전 발송하고 있음

주요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인쇄 기준

- 한-아세안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
- 한- 베트남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 한-중국 FTA :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 한-인도 CEPA :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선적일 포함)

## 4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관련 이중발급 의심

① (애로사항) ○○업체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정당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선적 이후에 기재사항 오류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하였음. 그러나 베트남 세관 담당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와 정정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중 발급을 의심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함

② (조치결과)

- 한국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시 기존 발급번호를 사용하는 대신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 ('19.11.19~)
-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신규 발급번호 부여) 및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진위 조회 사이트 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베트남 세관으로 발송
- 베트남 세관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FTA 특혜적용

③ (참고사항)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 발급번호를 채택

---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상시 발급 체계 운영 중('21.7월~)

〈 상시발급을 위한 임시 개청 신청 절차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개청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을 신청
[관세청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 개청 신청서」작성]

② 신청인은 임시개청을 신청한 시간에 맞춰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

③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발급 승인 여부 결정(당일 처리 원칙)

④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이 필요하거나,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원산지고시 제23조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받은 날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시개청 수수료 부과 [ 기본 수수료(평일 1천원, 휴일 3천원) + 시간당 수수료 ]

* 시간당수수료 : 00시~06시(1,750원), 06시~18시(750원), 18시~22시(1,200원), 22시~24시(1,750원)

---

## FTA 해외통관애로 상담(국내 · 외) 연락처

(21.8월말 현재)

| 구 분 | 기 관 | 연락처 |
|---|---|---|
| 대한민국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전화 : 032-452-3639<br>이메일 : incheonsupport@korea.kr |
| |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전화 : 02-510-1378<br>이메일 : seoulsupport@korea.kr |
| |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전화 : 051-620-6954<br>이메일 : busansupport@korea.kr |
| |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전화 : 053-230-5183<br>이메일 : daegusupport@korea.kr |
| |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전화 : 062-975-8193<br>이메일 : gwangjufta@korea.kr |
| |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 전화 : 031-8054-7032<br>이메일 : fta016@korea.kr |
| |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 | 전화 : 042-714-7539<br>이메일 : hssupport@korea.kr |
| 해외 관세관 | 베트남(호치민) | 전화 : (+84) 28-3822-5757(내선 139) |
| | EU(브뤼셀) | 전화 : (+32) 2-661-0070 |
| | 미국(워싱턴) | 전화 : (+1) 202-939-5677 |
| | 미국(LA) | 전화 : (+1) 213-385-9300(내선 304) |
| | 중국(북경) | 전화 : (+86) 10-8531-0844 |
| | 중국(상해) | 전화 : (+86) 21-6295-5000(내선 205) |
| | 중국(홍콩) | 전화 : (+852) 2862-1566 |
| | 중국(청도) | 전화 : (+86) 532-8399-7732 |
| | 중국(대련) | 전화 : (+86) 411-8235-6280 |
| | 일본(동경) | 전화 : (+81) 3-6400-0695 |
| | 태국(방콕) | 전화 : (+66) 2-247-3242 |
|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전화 : (+62) 21-2967-2555 |
| | 인도(뉴델리) | 전화 : (+91) 11-4200-7064 |

# 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TEL 02-510-1114
www.customs.go.kr/seoul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1
TEL 02-3470-8100
www.kfia.or.kr

인쇄처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중앙사업단
063-224-5640

* 본 책자의 내용은 식품기업의 FTA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을 유권해석, 업무처리,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청 및 관할 세관,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